



수의사 대상 동물학대 진료 경험 및 동물학대 대응체계 조사

수의사 대상 동물학대
진료 경험 및
동물학대 대응체계 조사

2023. 11.



한국동물복지연구소 대표 조희경

연구진

책임연구원 이혜원

연구원 김성남

연구원 조한슬

<차례>

1. 서론	1
가. 연구 배경 및 연구 목적	1
1) 연구 배경	1
2) 연구 목적 및 목표	2
나. 연구 범위 및 내용	3
1) 연구 범위	3
2) 연구 내용	3
2. 조사 결과	6
가. 동물학대 관련 법률 및 대응 체계의 한계점	6
1) '23 개정 「동물보호법」상 동물학대 금지 행위 및 처벌 규정	6
2) 동물학대 대응 체계의 한계점	10
나. 해외사례 조사	18
1) 국제 기구	18
2) 미국의 사례	20
3) 영국의 사례	33
다. 수의사 대상 동물학대 관련 조사	41
1) 응답자 인적 사항	41
가) 연령	41
나) 성별	41
다) 임상 경력	42
라) 임상 활동 여부	42
마) 임상 활동 지역	43
바) 임상 직책	44
2) 동물학대 진료 관련 조사	45
가) 과거 동물학대(의심) 진료 경험	45

(1) 과거 동물학대(의심) 진료 경험 여부	45
(2) 과거 동물학대(의심) 진료 경험 횟수	46
(3) 최근 2년 동안 동물학대(의심) 진료 경험 횟수	47
(4) 동물학대(의심) 상해의 종류	47
(5) 피학대(의심) 동물의 내원 당시 환자의 상태	49
(6) 피학대(의심) 동물의 진료 이후 환자의 상태	49
(7) 동물학대(의심) 가해자	50
나) 과거 동물학대(의심) 대응	51
(1) 과거 동물학대(의심) 시 신고 등의 조치	51
(2) 과거 동물학대(의심) 신고의 처리	54
(3) 과거 동물학대(의심) 미신고 이유	55
3) 향후 동물학대 대응 의향	56
가) 향후 동물학대 대응의 협조 의향 여부	56
나) 향후 동물학대 대응의 협조 방법	57
4) 동물학대 예방 및 대책 의견	58
3. 조사 및 평가의 한계	60
4. 결론 및 제언	61
가. 결론	61
1) 동물학대 관련 법률 및 대응 체계	61
2) 수의사 대상 동물학대 관련 조사	63
가) 동물학대(의심) 진료	63
나) 동물학대(의심) 대응	64
다) 동물학대 예방 및 대책 의견	64
나. 제언	65
1) 사법부의 동물학대 인식 전환의 필요성	65
2) 동물학대를 제보하는 수의사의 법적 보호 장치 마련	65

3) 동물학대 예방 교육자료 마련 및 배포 방법 강구	65
4) 동물학대 대응체계의 보완	66
5) 링크 그룹(Links Group)의 전략적 도입	66
5. 참고문헌	67
가. 국내 문헌	67
나. 해외 문헌	69

<표 목차>

[표 1] 「동물보호법」 제9조(적정한 사육·관리) 및 시행규칙 [별표 1]	6
[표 2] 「동물보호법」 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및 제97조(벌칙)	7
[표 3]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및 제71조(벌칙)	13
[표 4] 「동물에 대한 범죄 행위」 상의 동물에게 해를 입히는 경우 및 위반사항	21
[표 5] 미국 내 신고의무가 있는 주	23
[표 6] 수의사가 진료 시 직면할 수 있는 동물학대 상황	27
[표 7] 동물학대의 위험성 평가 및 처치 방법	27
[표 8] 동물학대 위험성 평가를 위한 보호자 설문지	29
[표 9] 동물학대 및 방치가 의심되는 경우의 동물병원 프로토콜 (예시)	30
[표 10] 동물학대 의심 보고서 양식 (예시)	32
[표 11] 「동물복지법」 상의 동물에게 해를 입히는 경우 및 위반사항	33
[표 12] 2019년도 영국의 「동물복지법」 위반 사례	36
[표 13] 왕립수의학기관의 「수의사 직업 행동 강령 지침」	39
[표 14] 응답자 연령 분포	41
[표 15] 응답자 성별 분포	41
[표 16] 응답자 임상 경력	42
[표 17] 응답자 임상 활동 여부	43
[표 18] 응답자 임상 활동 지역 분포	43
[표 19] 응답자 임상 직책 분포	44
[표 20] 동물학대(의심) 진료 경험 여부	45
[표 21] 경력	46
[표 22] 동물학대(의심) 상해 종류	48
[표 23] 동물학대(의심) 환자의 상해 정도	49
[표 24] 진료 이후 환자의 상태	50
[표 25] 학대 의심 가해자	51
[표 26] 동물학대(의심) 신고 여부	51

[표 27] 성별 학대 의심 신고	52
[표 28] 연령별 학대 의심 신고	52
[표 29] 직책별 학대(의심) 신고 여부	53
[표 30] 동물학대(의심) 신고의 사건 처리	54
[표 31] 동물학대(의심) 미신고 이유	55
[표 32] 향후 동물학대 대응의 협조 의향 여부	57
[표 33] 향후 동물학대 대응의 협조 방법	58
[표 34] 동물학대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의견	59

<그림 목차>

[그림 1] 대한수의사회의 「수의사의 신조」	1
[그림 2] 동물학대감시시스템	15
[그림 3] 아동 보호 업무 진행도	17
[그림 4] 링크 그룹(Links Group)의 가치	18
[그림 5] 동물학대가 의심 되는 경우 진행되는 ARDR 절차	19
[그림 6] 미국 수의사의 동물학대 신고의무 여부 (주별)	23
[그림 7] 미국수의사회의 가치	26
[그림 8] 개, 고양이의 복지를 위한 실천 강령	35
[그림 9] 학대받은 도베르만의 치료 전후 사진	37
[그림 10] 학대받은 고양이의 치료 전후 사진	38
[그림 11] 왕립수의학기관의 미션	39
[그림 12] 응답자 연령 분포 및 성별 분포	42
[그림 13] 응답자 임상 경력 및 임상 활동 여부	43
[그림 14] 응답자 임상 활동 지역 분포	44
[그림 15] 응답자 임상 직책 분포	45
[그림 16] 동물학대(의심) 진료 경험 여부	46
[그림 17] 경력 기간별 평균 동물학대(의심) 진료 경험 횟수	47
[그림 18] 동물학대(의심) 상해 종류	48
[그림 19] 동물학대(의심) 환자의 상태	50
[그림 20] 동물학대(의심) 가해자	51
[그림 21] 동물학대(의심) 신고 여부	52
[그림 22] 성별, 연령별 동물학대(의심) 신고 비율	53
[그림 23] 직책별 학대(의심) 신고 여부	54
[그림 24] 동물학대(의심) 신고의 사건 처리	55
[그림 25] 동물학대(의심) 미신고 이유	56
[그림 26] 향후 동물학대 대응 기관의 협조 의향 여부	57

[그림 27] 향후 동물학대 대응의 협조 방법	58
[그림 28] 동물학대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의견	59

1. 서론

가. 연구 배경 및 연구 목적

1) 연구 배경

- 2023년, 대한수의사회에서는 「수의사의 윤리강령」을 31년 만에 전면 개정하였음. 개정된 전문에 의하면 수의사는 수의학 지식을 바탕으로 동물의 건강과 복지를 우선적인 가치로 고려하고 지향하여야 하며, 우리 사회의 공중보건은 물론, 건강한 생태계 보전을 위해 전문직업인으로서 최선을 다한다고 명시되어 있음.¹⁾
- 이에 더해 대한수의사회에서는 일제 강점기 때 제정된 형태 그대로 100년 이상 유지된 「수의사의 신조」의 개정에 나서고 있으며, 신조에 동물복지 개념을 추가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음.²⁾ 또한 ‘동물병원 내원 동물학대 의심 환자 신고 지침’ 마련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음. 수의사는 동물학대 신고의무자로 보호가 필요하며, 학대 정황에 대한 객관적인 지표에 따른 신고를 위한 교육이 필요한 상황임.³⁾

[그림 1] 대한수의사회의 「수의사의 신조」



(출처: 데일리벳, <https://www.dailyvet.co.kr/news/association/186048>)

1) 「수의사의 윤리강령」, 대한수의사회, 2023.02.28. http://www.kvma.or.kr/kvma_Veterinary_society?num=7
 2) 「수의사의 신조」, 대한수의사회, 1922.02.27. http://www.kvma.or.kr/kvma_Veterinary_society?num=8
 3) 이학범, 수의사 신조에 동물복지 개념 담는다, 데일리벳, 2023.05.19. <https://www.dailyvet.co.kr/news/association/186048>

●●● 수의사 대상 동물학대 진료 경험 및 동물학대 대응체계 조사

- 2023년 2월 9일에 동물학대 검사를 위한 수의법의학 진단을 위한 시설인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설 동물병원이 정식 개설 허가를 받았으며, 동물학대 사실 및 사인 등을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증명할 것임을 시사함.⁴⁾ 또한 3월 14일에는 경찰 과학수사 자문위원으로 수의법의학 전문가가 합류하여, 학대당한 동물이나 범행에 이용된 동물의 부검 및 해당 동물의 공격성 등 성향 파악에 대한 자문을 담당함.⁵⁾
- Joo S et al.(2020)에 의하면 2018년 한국의 반려동물·농장동물 임상수의사 59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동물학대 의심사례를 목격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86.5%로 나타남.⁶⁾ 동물병원 수의사가 반려동물을 진료할 때 동물학대 의심 정황을 조기에 발견하고, 증거를 수집한 뒤 신고하면 동물학대 여부 판단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나타냄.⁷⁾
- 2013년부터 2018년까지 국내 동물 관련 범죄는 3.3배 증가한 데 비해⁸⁾, 2010년부터 2020년까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송치된 2,751명 중 구속된 사례는 5명에 불과하였음.⁹⁾ 동물학대 문제를 최전선에서 목격하고 있는 수의사를 대상으로 학대 예방을 위한 제도와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상황임.

2) 연구 목적 및 목표

가) 연구 목적

- '23년 개정된 「동물보호법」상의 금지된 동물학대 행위와 위반 시 처벌 규정을 조사하고, 실제 법 적용과 관련하여 신고 및 처벌사례 등을 조사함.
- 해외에서 동물학대 발생 시 처벌과 피해 동물의 보호, 예방 조치 등의 사례를 조사함.

4) 이학범, 검역본부 부설 동물병원 개원...“수의법의학 검사 수행”, 데일리벳, 2023.02.24.
<https://www.dailyvet.co.kr/news/prevention-hygiene/181205>

5) 이학범, 경찰 과학수사 자문위원에 수의법의학 전문가 위촉, 데일리벳, 2023.03.15.
<https://www.dailyvet.co.kr/news/etc/182442>

6) Joo S, Jung Y, Chun MS. An Analysis of Veterinary Practitioners' Intention to Intervene in Animal Abuse Cases in South Korea. *Animals (Basel)*. 2020 May 6;10(5):802. doi: 10.3390/ani10050802. PMID: 32384721; PMCID: PMC7277084.

7) 이학범, 동물학대 안 놓치려면 동물병원 수의사 대상 수의법의학 교육 필요, 데일리벳, 2023.03.30.
<https://www.dailyvet.co.kr/news/policy/183214>

8) 윤상준, 동물병원 수의사 86%가 동물학대 의심사례 마주친다, 데일리벳, 2020.05.22.
<https://www.dailyvet.co.kr/news/animalwelfare/131429>

9) 이경현, [칼럼] 국내 반려동물에서의 수의법의학검사 현황, 데일리벳, 2023.08.01.
<https://www.dailyvet.co.kr/news/189934>

- 수의사 대상으로 동물학대(의심) 진료 경험을 조사하고, 수의사의 동물학대 신고 등 대응 관련 현황을 파악하고자 함.

나) 연구 목표

- 동물학대 발생 시 사건의 처리 과정을 조사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외사례를 참고하여 대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수의사 대상 동물학대 조사를 기반으로, 동물병원 종사자의 동물학대 대응과 관련하여 그 방향성을 제안하고자 함.

나. 연구 범위 및 내용

1) 연구 범위

가) 시간적 범위

- 2022.11. ~ 2023.11.

나) 공간적 범위

- 전국의 임상수의사 185명 대상으로 설문조사 진행함.
- 온라인으로 동물학대 및 처벌사례 등을 조사하고, 해외사례를 조사함.

2) 연구 내용

가) 동물학대 관련 법률 및 대응 체계의 한계점

(1) '23년 개정된 「동물보호법」상 동물학대 금지 행위 및 처벌 규정

(2) 동물학대 대응 체계의 한계점

나) 해외사례 조사

(1) 국제 기구

(2) 미국의 사례

(3) 영국의 사례

다) 수의사 대상 동물학대 관련 조사

(1) 응답자 인적 사항

○ 연령

○ 성별

○ 임상 경력

○ 임상 활동 여부

○ 임상 활동 지역

○ 임상 직책

(2) 동물학대 진료 관련 조사

(가) 과거 동물학대(의심) 진료 경험

- 과거 동물학대(의심) 진료 경험 여부
- 과거 동물학대(의심) 진료 경험 횟수
- 최근 2년 동안 동물학대(의심) 진료 경험 횟수
- 동물학대(의심) 상해의 종류
- 피학대(의심) 동물의 내원 당시 환자의 상태
- 피학대(의심) 동물의 진료 이후 환자의 상태
- 동물학대(의심) 가해자

(나) 과거 동물학대(의심) 대응

- 과거 동물학대(의심) 시 신고 등의 조치
- 과거 동물학대(의심) 신고의 처리
- 과거 동물학대(의심) 미신고 이유

(3) 향후 동물학대 대응 의향

- 향후 동물학대 대응의 협조 의향 여부
- 향후 동물학대 대응의 협조 방법

(4) 동물학대 예방 및 대책 의견

2. 조사 결과

가. 동물학대 관련 법률 및 대응 체계의 한계점

1) '23 개정 「동물보호법」상 동물학대 금지 행위 및 처벌 규정

가) “동물”의 정의¹⁰⁾

- 「동물보호법」 제2조(정의)에 따르면 “동물”이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 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포유류, 조류, 파충류·양서류·어류)을 말함. 단, 동법 시행령 제2조(동물의 범위)에 따라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파충류·양서류·어류는 제외함.

나) “소유자등”의 정의와 의무¹¹⁾

- 「동물보호법」 제2조(정의)에 따르면 “소유자등”이란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하며, 동법 제9조(적정한 사육·관리) 및 시행규칙 [별표 1] 동물의 적절한 사육·관리 방법 등(제5조 관련)에 따른 의무를 가짐.

[표 1] 「동물보호법」 제9조(적정한 사육·관리) 및 시행규칙 [별표 1] 동물의 적절한 사육·관리 방법 등(제5조 관련)

제9조(적정한 사육·관리)
1. 소유자등은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소유자등은 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치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소유자등은 동물을 관리하거나 다른 장소로 옮긴 경우에는 그 동물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소유자등은 재난 시 동물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별표 1] 동물의 적절한 사육·관리 방법 등(제5조 관련)

10) 「동물보호법」, 시행 2023.09.15.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30915&lsiSeq=248779#J97:0>

11)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시행 2023. 04.27.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30427&lsiSeq=250599#0000>

<p>1. 일반기준</p> <p>가. 동물의 소유자등은 최대한 동물 본래의 습성에 가깝게 사육·관리하고,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며, 동물의 복지를 증진해야 한다.</p> <p>나. 동물의 소유자등은 동물이 갈증·배고픔, 영양불량, 불편함, 통증·부상·질병, 두려움 및 정상적으로 행동할 수 없는 것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동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p> <p>다. 동물의 소유자등은 동물의 사육환경을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p> <p>① 동물의 종류, 크기, 특성, 건강상태, 사육목적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적절한 사육환경을 제공할 것</p> <p>② 동물의 사육공간 및 사육시설은 동물이 자연스러운 자세로 일어나거나 눕고 움직이는 등의 일상적인 동작을 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크기일 것</p>
--

다) 동물학대 등의 금지 행위와 벌칙

- 「동물보호법」 제2조(정의)에 따르면 “동물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지하는 행위를 말함. 동법 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에는 동물학대 범위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으며, 위반 시 제97조(벌칙)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할 수 있음.

[표 2] 「동물보호법」 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및 제97조(벌칙)

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제97조(벌칙)
<p>1. 누구든지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①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p> <p>②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p> <p>③ 동물의 습성 및 생태환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동물을 다른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행위</p> <p>④ 그 밖에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 방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p>	<p>제10조 제1항을 위반한 자</p> <p>▪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p>
<p>2.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① 도구·약물 등 물리적·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해당 동물의 질병 예방이나 치료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p>	<p>제10조 제2항을 위반한 자</p> <p>▪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p>

<p>② 살아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몸을 손상하거나 채액을 채취하거나 채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단, 해당 동물의 질병 예방 및 동물실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p> <p>③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p> <p>④ 동물의 몸에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 (생략)</p>	
<p>3. 누구든지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 또는 피학대 동물 중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제10조 제3항을 위반한 자</p>
<p>① 포획하여 판매하는 행위</p> <p>② 포획하여 죽이는 행위</p> <p>③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p> <p>④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 또는 피학대동물 중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동물임을 알면서 알선·구매하는 행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 3, 4호: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2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p>4.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제10조 제4항을 위반한 자</p>
<p>①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p> <p>②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및 먹이 제공, 적절한 길이의 목줄, 위생·건강 관리를 위한 사항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육·관리 또는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하는 행위</p> <p>③ 제2호의 행위로 인하여 반려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호(맹견¹²)을 유기한 소유자), 제2호: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1호(맹견 제외): 300만원 이하의 벌금 ▪ 제3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p>5.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제10조 제5항을 위반한 자</p>
<p>① 제1항부터 제4항까지(제4항 제1호는 제외한다)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을 판매·전시·전달·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 다만, 동물보호 의식을 고양하기 위한 목적이 표시된 홍보 활동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는 행위 또는 동물을 이용하는 도박을 행할 목적으로 광고·선전하는 행위. 다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행산업은 제외한다.</p> <p>③ 도박·시합·복권·오락·유흥·광고 등의 상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0만원 이하의 벌금

<p>하는 행위</p> <p>④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하는 행위. 다만, 「장애인복지법」제 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건의 대여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p>	
--	--

- 이 중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자는 동법 제100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제1항에 따라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면서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 예방에 필요한 다음과 같은 수강명령¹³⁾ 또는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물학대 행동의 진단·상담 ■ 소유자등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게 하기 위한 교육 ■ 그 밖에 동물학대행위자의 재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

- 「동물보호법」 제39조(신고 등)에 의하면 수의사, 동물병원의 장 및 그 종사자는 직무상 학대를 받는 동물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동물보호센터에 신고하여야 하나, 동물학대를 신고하지 않았을 때의 불이익이 없어 사실상 권고에 가까움.¹⁴⁾ 또한,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되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이 공개되더라도 이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으며, 동물학대 범죄의 경우 ‘특정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자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서 규정된 보호 조치도 받기 어려운 상황임.
- 동물학대에 따라 신고한 자 또는 신고·통보를 받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시·도 가축방역기관장 또는 국립 가축방역기관장에게 해당 동물의 학대 여부 판단 등을 위한 동물검사를 의뢰할 수 있음.

12) 「동물보호법」 제2조(정의)에 따르면 “맹견”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를 말한다.
 ㉠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동물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로써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
 ㉡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동물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어 제24조 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맹견으로 지정한 개

13)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강명령을 말함
 14) 윤상준, 동물병원 수의사 86%가 동물학대 의심사례 마주친다, 데일리벳, 2020.05.22.
<https://www.dailyvet.co.kr/news/animalwelfare/131429>

2) 동물학대 대응 체계의 한계점

- '21 동물자유연대 이슈리포트(vol.8)에서는 동물학대와 아동학대를 비교 분석하여 동물학대 대응 체계 개선 방향을 제시한 바 있음. 본 보고서에서는 이슈리포트에서 다룬 동물학대 범죄 특성으로 인한 대응 체계 한계점을 다시 한번 짚어보고, 문제와 맞닥뜨리고 있는 수의사의 역할과 관련하여 대응 방법을 모색하고자 함.¹⁵⁾

가) “아동학대”와의 유사점

(1) 발견의 어려움

■ 동물학대 사례 1. 쓰레기 속에 혼자 방치되어 아사 직전 구조된 보더콜리

2020년 10월 서울 성동구에서 오랫동안 임차인과 연락이 닿지 않고 반려견만 몇 개월째 홀로 지내고 있다는 제보 접수. 동물보호단체와 지자체 동물보호담당관, 경찰이 현장 방문하여 보더콜리 한 마리 구조. 집 안에서는 사람의 흔적이 전혀 없었으며, 이웃 주민은 3개월 전부터 임차인이 보이지 않았다고 증언, 동물보호담당관은 격리 조치 시행.

- 동물학대의 경우 아동학대 사건과 유사하게 가정 내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져 학대 징후를 포착하기 어려우며, 제3자가 이를 알고있어도 ‘가정사’라는 이유로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아 외부로 드러나기 어려움. 사회에서 이슈화되었던 동물학대 사건들은 대부분 가정 밖에서 발생, 가정 내 사건의 경우 외부에서 확인이 어려움.
- 아동학대의 경우 보육 및 교육기관, 영유아 검진 및 병원 진료 과정에서 학대 확인이 가능하며, 기관이나 병원 진료 기록이 없는 경우 보호 필요 아동으로 추정하여 각 읍·면·동으로 통지됨. 반면 동물의 경우 광견병 외 예방접종이나 건강검진의 의무도 없어 외부 노출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 학대 여부 확인이 더욱 제한적임.

15) [이슈리포트] 2021.07 Vol.8 아동학대와의 비교를 통한 동물학대 대응체계 개선방향, 동물자유연대, <https://www.animals.or.kr/report/print/57169>

(2) 증거수집의 어려움

■ 동물학대 사례 2. 차량 이용 동물학대 사건

2019년 5월 전북 군산에서 봉고차 뒤에 개를 묶고 운행하는 모습을 포착한 시민이 동물자유연대에 제보. 동물자유연대는 해당 영상을 증거로 경찰에 고발. 견주는 조사 과정에서 “운동을 시키기 위해 서였다”라며 “시속 15킬로미터로 천천히 달려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 경찰에서는 범죄에 대한 고의성 등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사건 종결.

- 동물학대는 아동학대와 마찬가지로 범죄 자체를 확인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증거수집 또한 쉽지 않음. 상해 등 일부 학대 정황이 드러난다고 하더라도 동물의 ‘실수’ 등으로 둘러대는 사례가 많으며, 동물의 경우 인간의 언어로 소통이 불가능해 피해진술능력이 전무하다는 점도 실제 학대 여부 입증을 어렵게 하는 요소로 작용함.

(3) 사회적 인식

■ 동물학대 사례 3. 인터넷 방송에서의 동물학대 사건

2019년 7월 인천, 유튜버 A씨가 인터넷 방송을 통해 자신이 기르는 허스키 종 강아지의 목덜미를 잡아 수차례 가격하는 모습 공개. 당시 방송을 보던 시청자들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내 개를 내가 훈육하는데 무슨 상관이나”라며 “시청자들의 허위 신고를 받고 오신 거다”며 조사 거부. 이에 경찰도 현장에서 철수. A씨는 방송을 통해 훈육 차원의 ‘체벌’이라고 해명, “바뀔 건 없다. 제 강아지 잘못했을 때 저는 때리면서 키울 거예요. 체벌할 겁니다”라고 변명. 해당 사건은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며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만원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음.

- 동물학대의 경우도 아동학대와 마찬가지로 훈육과 학대의 경계가 불분명하고, 동물에 대한 훈육과 체벌에 관대하여 동물학대를 용인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됨. 이러한 그릇된 인식으로 동물학대 가해자들은 학대를 훈육으로 정당화시키고, 학대 범죄에 대한 변명거리로 활용하고 있음.

(4) 학대 대상 보호의 문제

■ 동물학대 사례 4. 풍차돌리기 동물학대 사건

2020년 12월 포항시 북구 건주 A는 친구 B씨와 함께 산책하던 중 강아지를 줄에 묶고 공중에 수차례 돌리는 등 동물을 학대. 당시 A씨와 B씨는 어두운 주택가 골목을 걷다 갑자기 목줄을 잡아당기며 강아지를 빙빙 돌렸고, 바닥에 떨어진 강아지는 킁킁거리며 고통스러워함. 강아지는 사건 당일 바로 동물보호소에 격리, 보호조치 되었으나 포항시 측은 “건주가 소유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라며 동물학대 재발 방지 서약서에 서명 확인 후 격리 조치 보호 비용 10만원 수납 뒤 격리 5일 만에 반환하였음.

- 동물학대의 경우 아동학대와 마찬가지로 학대 대상의 보호 문제가 발생함. 피학대 동물이 학대를 가한 보호자와 같은 공간에 남아있게 될 경우 재학대 우려가 있고, 이들에 대한 보호 문제는 수사의 제약 요소로 작용함.
- 특히 동물의 경우 그 자체로 증거물의 성격이 있어 해당 동물을 처분함으로써 사건 은폐 시도를 할 수 있음. 앞서 [사례 2]의 차량 이용 동물학대 사건에서도 동물자유연대에서 경찰에 동물학대 혐의로 고발했으나 별다른 격리 조치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추가적인 조사 요구에 견주는 “개가 죽어서 산에 묻었다”고 주장함.
- 피학대 동물의 경우 「동물보호법」 제34조(동물의 구조·보호)에서 학대받은 동물에 대해 수의사의 진단에 따라 5일 이상 격리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보호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으로 동물학대 대응에서 한계점이 있음.

나) “아동학대”와의 차이점

(1) 법률적 차이

- 아동학대는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의 법률 적용을 받고 있음.

-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에 따르면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하며 동법 제17조(금지행위) 및 제71조(벌칙)에 따라 규제를 받고 있음.¹⁶⁾

[표 3]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및 제71조(벌칙)

제17조(금지행위)*	제71조(벌칙)
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년 이하의 징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17)에 따른 매매는 제외)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6.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7.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8.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9.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	
10.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1.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 제17조 제4항은 2014년 1월 28일자에 삭제됨.

16) 「아동복지법」, 시행 2023.09.15.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30915&lsiSeq=248785#0000>

1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하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또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는 행위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매매 또는 국외에 이송하거나 국외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을 국내에 이송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 수의사 대상 동물학대 진료 경험 및 동물학대 대응체계 조사

- “아동학대관련범죄”란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및 아동에 대한 「형법」 제2편 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부터 제255조까지의 죄를 말하며, “아동학대”와 구분 지어 정의되고 있음.
-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에 의해 「의료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으면 제63조(과태료)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¹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아동복지법」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에 따라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반할 경우 동법 제75조(과태료)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의3을 위반하여 아동학대 신고인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보호조치와 관련하여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또한 동법 제10조의2 ‘불이익조치의 금지’를 위반하여 아동학대 신고자의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제62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이 외 제62조의2에 해당하는 불이익의 조치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2) 진료인의 역할 차이

(가) 동물학대에서 수의사의 역할

- 동물학대와 수의사는 직접적으로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질병진단과에서 실시하는 수의법의부검, 즉 수의학적 진단과 부검을 통해 동물의 죽음과 상해의 원인을 밝혀냄으로써 연관성을 가지고 있음. 간접적으로, 동물을 마주하게 되는 농장동물, 반려동물 관련 임상수의사도 진단 중 동물학대에 마주할 수 있음. 그러나, 학대 의심사례를 가려낼 수 있는 별도의 가이드라인이나 교육, 제도적 지원이 미비하여 수의사 개개인의 판단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임.

18)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23.06.28.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30628&lsiSeq=246615#J63:0>

- [그림 2]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학대감시시스템에 따르면, 동물학대 신고 시 경찰이나 지자체 동물보호관이 현장 조사와 사례분석을 통한 수사 과정을 거쳐 단순학대 사례인지, 긴급동물학대 사례인지 판단함. 단순학대 사례의 경우 교육과 모니터링이 이루어지며, 긴급동물학대 사례라 판단될 경우 가해자는 사법기관의 판결에 따라 처벌되며 동물은 동물보호기관에서 보호와 치료가 이루어짐.
- 농림축산식품부 발표에 따르면 '22년 동물학대 신고 건수는 6,594건인데 반해¹⁹⁾, '22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 「동물보호법」 위반 총 1,181건 중 동물 학대의 처분은 36건 (3.0%)에 불과함.²⁰⁾

[그림 2] 동물학대감시시스템



* 동물보호감시원은 「동물보호법」 개정 시행에 따라 동물보호관으로 명칭 변경

(출처: 농림축산검역본부, https://www.qia.go.kr:8443/animal/protect/ani_prot_ani_watch_sys.jsp)

-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동물학대로 인해 폐사한 것으로 의심되어 농림축산검역본부 질병진단과로 의뢰된 개 또는 고양이는 총 772마리였으며, 2019년에 102마리, 2020년에 119마리, 2021년에 228마리, 2022년에 323마리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이들에 대해 수의법의부검을 실시하고 각각의 사인명을 토대로 분석을 실시한 결과, 외인사(학대 등)로 인한 비율은 개에서 4년 합산 43.2%, 고양이는 4년간 36~45%로 나타남. 대부분 경찰서(74%)에서 「동물

19) 정진욱, “신고하면 뭐 하나요”... 여전히 벌금·집행유예 그치는 동물학대 사건, 한국일보, 2023.09.12.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91110520002645>

20) 2022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23.08.11. <https://www.mafra.go.kr/home/5109/subview.do>

보호법」 위반으로 신고된 후 의뢰되었으며, 동물병원 및 개인이 16%, 지자체가 7%의 비율을 차지함.²¹⁾

(나) 아동학대에서 의사의 역할

○ 대한의사협회에서는 2003년에 ‘의사들을 위한 아동학대 예방 및 치료 지침서’를 발간하였으며,²²⁾ 보건복지부와 소아응급의학회 등이 함께 ‘의료인 신고의무자용 아동학대 선별도구(FIND)’ 체크리스트를 제공하고 있음.²³⁾ 의사에게 기대되는 아동학대에 대한 역할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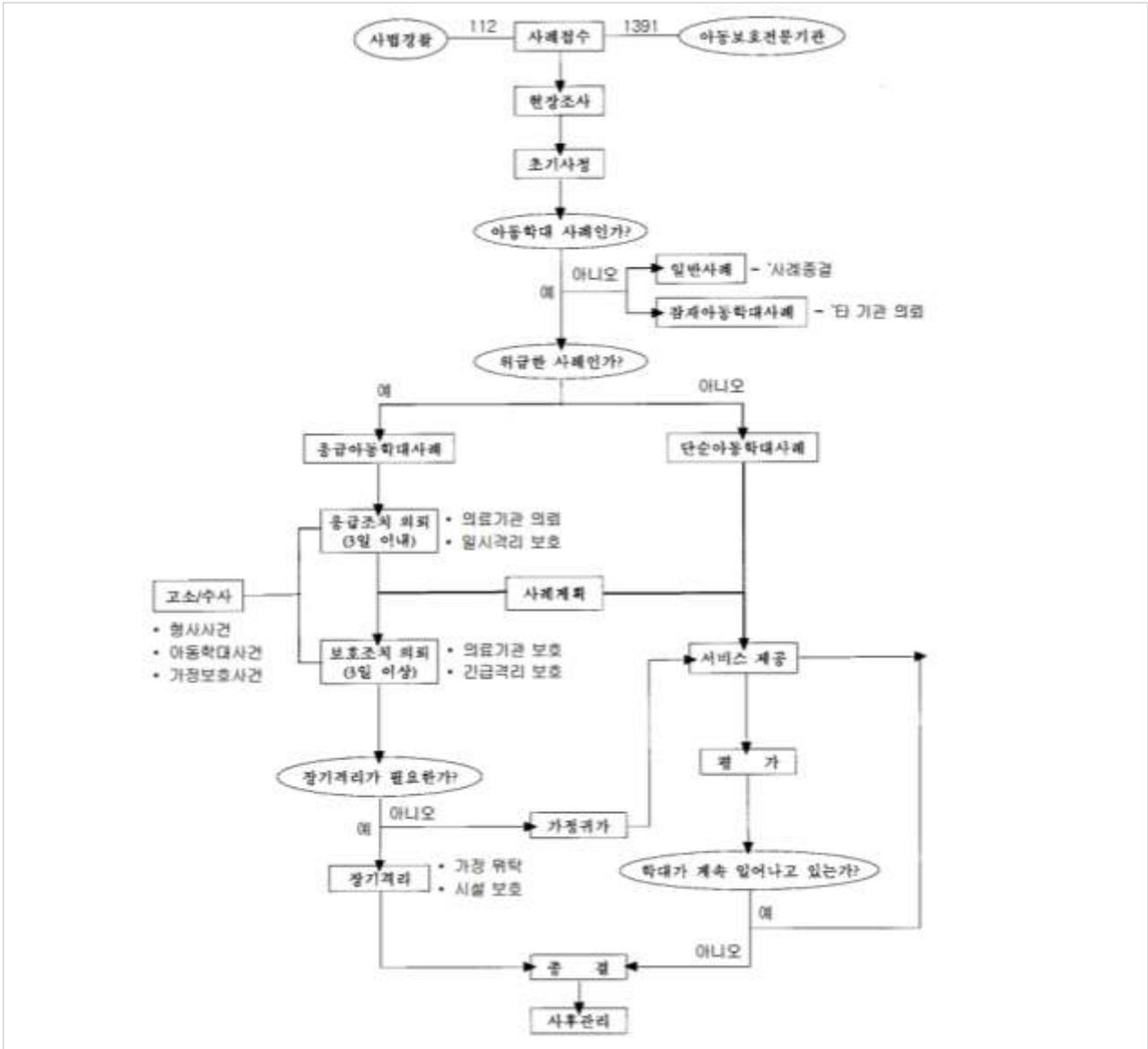
- 학대 및 방임의 증상과 증후를 발견해야 한다.
- 학대 및 방임으로 인한 손상이나 후유증에 대한 의학적 진단 및 치료를 담당해야 한다.
- 아동이 더 심한 손상을 입지 않도록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정확하고 철저한 의학적 평가를 시행하고 기록을 남겨야 한다.
- 아동과 그 보호자를 객관적이며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살펴야 한다.
- 가능한 가족과 치료적 유대관계를 맺거나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집에 남아있는 다른 아동들을 대상으로 의학적 평가를 내리도록 노력해야 한다.
- 법에 따라 학대를 받는다고 의심되는 아동을 경찰이나 아동학대예방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 의료전문가로서 아동학대와 관련된 증언이나 법적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 의료전문가로서 아동학대에 관련한 정책 수립, 제도 개선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21) 이경현, [칼럼] 국내 반려동물에서의 수의법의검사 현황, 데일리벳, 2023.08.01.
<https://www.dailyvet.co.kr/news/189934>

22) 의사들을 위한 아동학대 예방 및 치료 지침서, 대한의사협회 국민의학지식향상위원회 산하 아동학대예방대책팀, 대한의사협회지, 2003.

23) 김상기, 진료실에서 본 아이, 어떤 경우 아동학대를 의심하고 신고는 어떻게?, 라포르시안, 2019.12.03.
<https://www.rapport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21908>

[그림 3] 아동 보호 업무 진행도



(출처: 의사들을 위한 아동학대 예방 및 치료 지침서, 대한의사협회)

- 대한의사협회 교육센터는 ‘의료인을 위한 아동학대 의심 사례 신고의무자 교육’ 강의를 제공하고 있으며²⁴⁾, 보건복지부는 시·도 단위에서 고난도 아동학대 사례를 치료·자문하고, 관할 시·도 내 전담의료기관 의료진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인 ‘새싹지킴이병원’을 도입하였음.²⁵⁾

24) 대한의사협회 교육센터, 의료인을 위한 아동학대 의심사례 신고의무자 교육, 2023.09.21.에 접근, https://edu.kma.org/edu/cyber_view?cyidx=76

25) 인구아동정책관 아동학대대응과, 광역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새싹지킴이병원)을 전국으로 확대합니다!, 보건복지부, 2023.02.02.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374851

나. 해외사례 조사

1) 국제 기구

가) 링크 그룹(Links Group)

- 링크 그룹(Links Group)은 인간과 동물학대를 예방하는 단체로, 영국, 미국, 호주, 브라질, 캐나다 등 국제적으로 분포함. 교육과 지원 협력을 통해 인간과 동물학대 사이의 연관성에 대해 인식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함.²⁶⁾

[그림 4] 링크 그룹(Links Group)의 가치

	<p style="text-align: center;"><링크 그룹의 가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는 연민을 가지고 교육한다. ■ 우리는 소통하고 협력한다. ■ 우리는 판단하지 않으며 지원한다. ■ 우리는 존경과 감수성을 가지고 일한다. ■ 우리는 인간과 동물의 복지를 증진한다. ■ 우리는 증거에 기반하고, 공감력이 있다.
--	---

(출처: The Links Group, <https://www.thelinksgroup.org.uk/about-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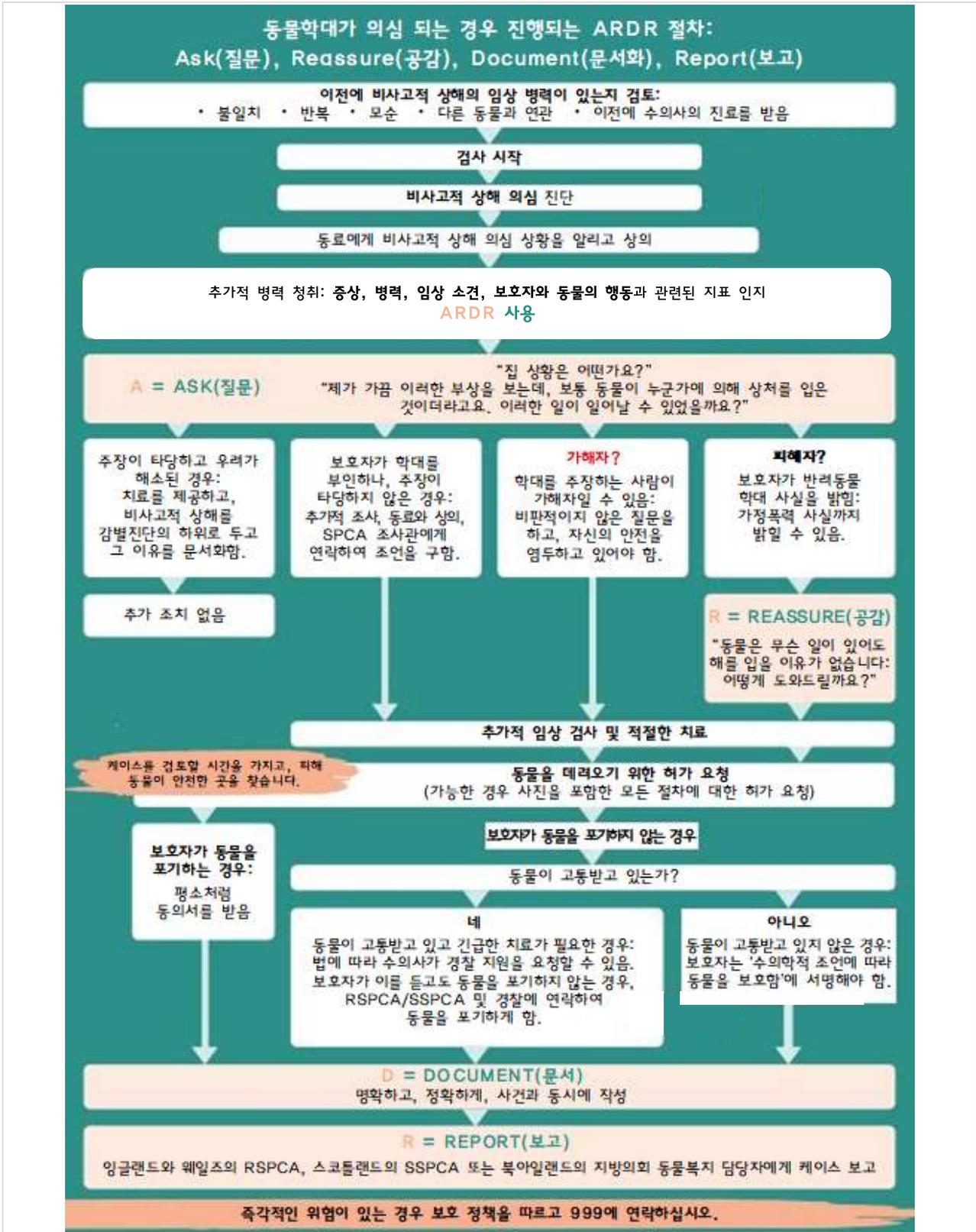
- 영국 링크 그룹은 ‘동물과 인간학대 의심: 동물병원 종사자를 위한 가이드북’을 제작하여 동물학대가 의심될 경우 수의사가 밟아야 할 절차를 소개하고 있음. 절차는 질문(Ask, A), 공감(Reassure, R), 문서화(Document, D), 보고(Report, R), 즉 ‘ARDR 절차’로 설명함.²⁷⁾

- 질문(Ask, A): 학대 상황인지 확인하거나 학대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한 질문이 필요함. 질문 시 비판적 단어를 사용하지 않으며, 보호자가 대답할 때까지 기다리고 경청함.
- 공감(Reassure, R): 동물은 다쳐도 될 정당한 이유가 전혀 없으며, 도움을 줄 방법을 모색함.
- 문서화(Document, D): 명확하고, 간결하게, 상담과 동시에 기록함. 학대 상황으로 의심되는 경우, 상담 내용을 임상 용어보다는 보호자가 사용한 단어 그대로 기록해 놓는 것이 좋음.
- 보고(Report, R): 동물복지기관이나 경찰에 보고함.

26) National Link Coalition, Foreign Coalitions, 2023.09.22.에 접근, <https://nationallinkcoalition.org/link-coalitions/foreign-coalitions>

27) Suspect abuse of animals and people: Guidance for the veterinary team, Links Group, 2023.09.20.에 접근, <https://thelinksgroup.org.uk/veterinary-team-guidance>

[그림 5] 동물학대가 의심 되는 경우 진행되는 ARDR 절차



(출처: Links Group, <https://thelinksgroup.org.uk/veterinary-team-guidance>)

2) 미국의 사례

가) 동물학대 관련 법률

(1) 「동물복지법」, 연방법²⁸⁾

- 제2156조(동물싸움 금지)에 따르면 모든 이가 동물싸움에 참여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불법 사항이며 더 나아가 동물싸움에 동물을 제공하거나 16세 미만의 개인을 참가시키는 것 역시 위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각 항에 따라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음.²⁹⁾
- 제2160조(식용을 위한 개, 고양이 도살 금지)에 따르면 식용을 위해 고의로 개나 고양이를 도살하거나, 배송·소유·판매·구매하는 행위를 위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5,000 (2023.09.25.기준 6,687,500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³⁰⁾
- 각 동물 종별 인도적인 취급, 관리, 치료 및 운송법에 관한 표준 강령이 규정되어 있음. 개와 고양이의 경우, 시설관리 기준(실내/보호소/야외/이동장), 건강 관리 기준(운동/음식/물/위생/수의학적 치료), 운송 기준 등이 마련되어 있음.³¹⁾

(2) 「동물에 대한 범죄 행위」, 오하이오 주법

- 「동물에 대한 범죄 행위」에 사용되는 단어의 정의는 「인도적인 사회」 제1조(정의)에 서술되어 있음.³²⁾³³⁾

28) 7 USC Ch. 54: TRANSPORTATION, SALE, AND HANDLING OF CERTAIN ANIMALS, <https://uscode.house.gov/view.xhtml?path=/prelim@title7/chapter54&edition=prelim>

29) 18 USC 49: Enforcement of animal fighting prohibitions, [https://uscode.house.gov/view.xhtml?req=\(title:18%20section:49%20edition:prelim\)%20OR%20\(granuleid:USC-prelim-title18-section49\)&f=treesort&edition=prelim&num=0&jumpTo=true](https://uscode.house.gov/view.xhtml?req=(title:18%20section:49%20edition:prelim)%20OR%20(granuleid:USC-prelim-title18-section49)&f=treesort&edition=prelim&num=0&jumpTo=true)

30) 2023.09.25.기준 \$1의 환율은 한화 1,336.5원임.

31) Subpart A—Specifications for the Humane Handling, Care, Treatment, and Transportation of Dogs and Cats1, <https://www.ecfr.gov/current/title-9/chapter-I/subchapter-A/part-3/subpart-A>

32) Ohio Revised Code Title IX. Agriculture Animals Fences, <https://codes.findlaw.com/oh/title-ix-agriculture-animals-fences/#!tid=N05C45280E30611E694B8880A7C54FE94>

33) Ohio Revised Code Title XVII. Corporations Partnerships, <https://codes.findlaw.com/oh/title-xvii-corporations-partnerships/oh-rev-code-sect-1717-01.html>

- “동물”이란 살아 있는 모든 말 못 하는 생물이 포함됨.
- “잔인함”, “고문”이란 합리적인 방법이 있음에도 불필요하거나 정당화될 수 없는 고통을 유발하거나, 허용하거나, 지속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함. 여기에는 방치도 포함됨.
- “소유자”란 보호하고 있는 동물과 관련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뜻함.

○ 제2조(동물 상해), 제3조(동물 약물 중독), 제13조(동물학대), 제131조(반려동물학대), 제15조(동물싸움), 제16조(투견) 등에 의해 동물에게 해를 입히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제99조(벌칙)에 따라 규제받고 있음.³⁴⁾

[표 4] 「동물에 대한 범죄 행위」 상의 동물에게 해를 입히는 경우 및 위반사항

제2조(동물 상해)	제99조(벌칙)*
1. 누구도 고의로 소유자의 동의 없이 개, 고양이 등을 죽이거나 다치게 하면 안 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급 경범죄임. ■ 살해된 동물의 가치가 \$300(2023.09.25.기준 400,950원) 이상인 경우, 1급 경범죄임.
제3조(동물 약물 중독)	
1. 누구도 고의로 소유자의 동의 없이 개, 고양이 등에게 독성이 있는 약물을 투여하면 안 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급 경범죄임.
제13조(동물학대)	
1. 누구도 동물을 고문하거나, 필요한 음식을 주지 않거나, 불필요하고 잔인하게 구타·절단·살해하거나, 건강에 필요한 충분한 양의 음식과 물을 주지 않고 가두어서는 안 됨. 2. 동물이 아프거나 고통받을 것이라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바람, 비, 눈 또는 과도한 직사광선을 피할 수 있는 공간 없이 가두어서는 안 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급 경범죄임.
제131조(반려동물학대)	
1. 누구도 반려동물을 고의로 고문하거나, 불필요하고 잔인하게 구타·절단·살해하거나, 독성이 있는 약물을 투여하면 안 됨. 2. 반려동물을 관리하는 사람은 다음을 행하면 안 됨. ㉠ 반려동물을 고문하거나, 괴롭히거나, 학대하는 경우 ㉡ 반려동물이 아프거나 고통받을 것이라고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항: 처음 위반 시 1급 경범죄, 이후에는 5급 중범죄임. ■ 제2항: 처음 위반 시 2급 경범죄, 이후에는 1급 경범죄임.

34) Ohio Revised Code Title XXIX. Crimes Procedure, <https://codes.findlaw.com/oh/title-xxix-crimes-procedure/#!tid=N6A472E805DE711DB8852FC25F2F5B472>

<p>요소를 박탈하거나, 가둬두는 동안 건강에 필요한 충분한 양의 음식과 물을 공급하지 않는 경우</p> <p>㉔ 반려동물을 가둬두는 동안 더위·추위·바람·비·눈 또는 과한 직사광선을 피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지 않아 아프거나 고통받는 경우</p>	
<p>제15조(동물싸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항: 4급 경범죄임. ▪ 제2항: 중범죄로, \$10,000(2023.09.25.기준 13,365,000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
<p>1. 누구도 닭싸움, 곰 굴리기³⁵⁾ 또는 동물을 다른 동물과 겨루는 행위를 수행해서는 안 됨.</p> <p>2. 동물싸움에 고용되거나, 배팅하거나, 입장비를 받거나, 싸움을 위해 동물을 훈련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됨.</p>	
<p>제16조(투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처음 위반 시 4급 중범죄, 이후에는 3급 중범죄임.
<p>1. 누구도 고의로 투견을 조장, 참여하거나, 고용하거나, 입장비를 받거나, 투견을 판매·구매·소유·훈련하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됨.</p>	

* 제99조(벌칙)에 기재된 중·경범죄의 기준은 다음과 같음.

- ① 3급 중범죄: \$10,000(2023.09.25.기준 13,365,000원) 이하의 벌금 또는 9, 12, 18, 24, 30, 36개월의 징역
- ② 4급 중범죄: \$5,000(2023.09.25.기준 6,682,500원) 이하의 벌금 또는 6~18개월의 징역
- ③ 5급 중범죄: \$2,500(2023.09.25.기준 3,341,250원) 이하의 벌금 또는 6~12개월의 징역
- ④ 1급 경범죄: \$1,000(2023.09.25.기준 1,336,500원) 이하의 벌금 또는 180일 이하의 징역
- ⑤ 2급 경범죄: \$750(2023.09.25.기준 1,002,000원) 이하의 벌금 또는 90일 이하의 징역
- ⑥ 3급 경범죄: \$500(2023.09.25.기준 668,000원) 이하의 벌금 또는 60일 이하의 징역
- ⑦ 4급 경범죄: \$250(2023.09.25.기준 334,000원) 이하의 벌금 또는 30일 이하의 징역

(3) 수의사의 동물학대 신고의무 여부 (주별)

- 2023년 현재 미국의 대부분의 주에서는 수의사의 동물학대 의심 사례 보고를 의무화하거나, 권장(자발적 보고), 학대 의심 사례 보고에 따른 법적 책임(민사적, 형사적 책임) 면제를 제공³⁶⁾하고 있으며, 약 12개 주에서는 수의사의 동물학대 신고 관련 법이 없는 것으로 파악됨.³⁷⁾
- 의무화된 23개 주중 일부 주는 동물싸움이나 매우 잔인한 학대에 대해서만 신고 의무가 있으며, 펜실베이니아의 경우 다른 수의사의 반복적인 과실 행위에 대해서도 신고해야 함.³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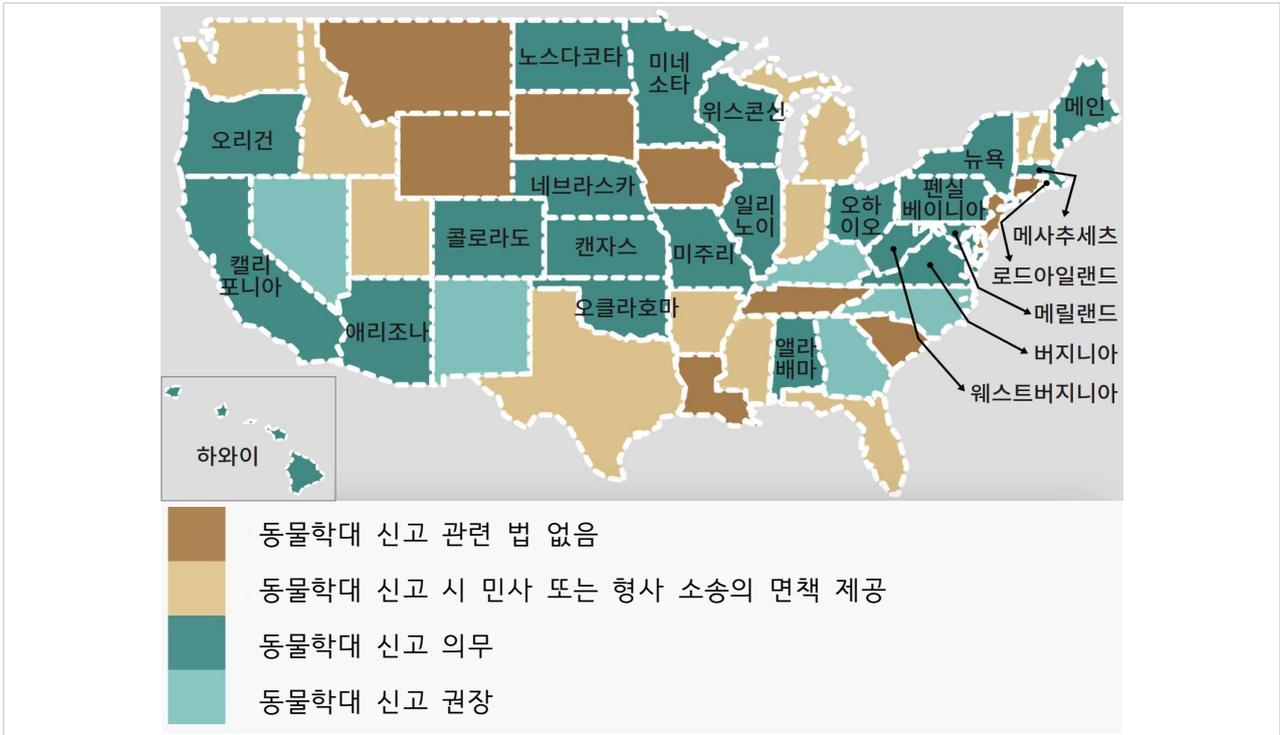
35) bearbaiting, 곰 굴리기, 쇠사슬로 묶인 곰에게 개를 덤비게 하는 옛놀이, 동아출판 프라임 영한사전

36) 동물학대 의심 사례 보고가 의무이거나 권장되는 대부분의 주에서는 면책 조항도 포함되어 있음.

37) Animal Legal&historical Center, Map of Veterinary Reporting Laws for Animal Cruelty, 2023.11.13. 접근, <https://www.animallaw.info/content/map-veterinary-reporting-laws-animal-cruelty>

38) Animal Legal&historical Center, Table of Veterinary Reporting Requirement and Immunity Laws, 2023. <https://www.animallaw.info/topic/table-veterinary-reporting-requirement-and-immunity-laws>

[그림 6] 미국 수의사의 동물학대 신고의무 여부 (주별)



(출처: Animal Legal&Historical Center, <https://www.animallaw.info/content/map-veterinary-reporting-laws-animal-cruelty>)

- 미국수의사회는 동물 학대 또는 방치 의심 사례 신고로, 수의사가 면허 정지나 취소와 같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법률적 면책 조항을 주 정부에 권장하고 있음.³⁹⁾

[표 5] 미국 내 신고의무가 있는 주

주*	동물학대 신고의무자	보고** (필수/허용/격려)	면책 조항
앨라배마	수의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의사가 직접 동물에 대한 비인도적 대우를 확인한 경우, 당국에 보고할 의무가 있음. 	없음
애리조나	수의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의사는 동물학대, 방치 또는 동물싸움이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경우, 치료·검사 이후 48시간 이내에 법 집행 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음. 보고서에는 동물의 품종 등 설명과 치료를 받고자 한 소유자의 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의사는 규정된 대로 보고서를 제출할 경우 민사 책임을 면함

39) American Veterinary Medical Association, Reporting Requirements for Animal Abuse, 2021.10, https://www.avma.org/sites/default/files/2021-10/Reporting-requirements_for-animal-abuse.pdf

●●● 수의사 대상 동물학대 진료 경험 및 동물학대 대응체계 조사

		<p>름과 주소가 포함되어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장동물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사례를 애리조나 농무부에 보고해야 함. 	
캘리포니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면허가 있는 수의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투견 또는 동물학대의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경우 즉시 법 집행기관에 신고가 요구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의사는 신고로 인한 민사 책임을 면함
콜로라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면허가 있는 수의사 모든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물학대 또는 동물싸움의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경우 법 집행 기관 또는 동물보호국에 신고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의사, 학대 신고자는 신고로 인한 민사 또는 형사 책임을 면함
하와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식으로 면허를 취득한 수의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물학대 또는 동물싸움의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경우 법 집행 기관 또는 동물보호국에 신고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의사는 신고로 인한 민사 책임을 면함
일리노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 내 모든 수의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물학대 치료를 맡았거나 관찰한 경우 해당 부서에 보고서 제출이 요구됨. 보고서는 소유자의 이름, 동물 정보(동물 치료 날짜, 마이크로칩 번호 등)가 요구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의사는 신고로 인한 민사, 형사 또는 기타 책임을 면함
캔자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면허가 있는 수의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물에 대한 잔인하거나 비인도적인 대우에 대해 직접 알고 있음에도 당국에 보고하지 않는 것은 비전문적 행위로 간주하며, 징계 조치 근거가 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양 혹은 안락사된 동물의 소유자가 부당함을 증명하지 않는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동물 학대 사실을 보고할 경우 보호자의 기밀 유지 조항이 면제됨
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에서 면허를 받은 수의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물학대, 방치의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경우 수의사는 위반사항을 신고할 수 있음. 면허가 있는 수의사가 전문적으로 활동 중 동물학대가 가중되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경우 위반사항을 보고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의사는 규정한 대로 보고한 경우 민사, 형사, 전문 징계 조치로부터 책임을 면함
메릴랜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의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의사가 치료한 동물이 학대 또는 싸움의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경우 법 집행기관 또는 동물 관리기관에 신고해야 함. 보고서에는 동물 정보(이름, 나이, 위치), 소유자 정보(이름, 주소), 동물학대 또는 동물싸움의 의심 범위 등을 기재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의사는 신고로 인한 민사 또는 형사 책임을 면함

메사추세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식으로 등록된 수의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업무 내에 수의사가 동물학대를 알고 있거나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경우 경찰관 또는 특수경찰관에게 신고해야 함. 동물학대 행위를 신고하지 않는 수의사는 수의학 등록 위원회에 보고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의사는 업무상 알게 된 학대 사실 신고로 인한 민사 또는 형사 책임을 면함
-------	--	--	--

* 미국 내 신고의무가 있는 23개주 중 알파벳(A~Z) 상 상위 10개 주를 나열함.

** 수의사의 동물학대 신고의무 관련 법률은 다음과 같음.

- ① 앨라배마: Ala. Admin. Code r. 930-X-1-.10(16)
- ② 애리조나: A.R.S. §32-2239
- ③ 캘리포니아: West's Ann.Cal.Bus. & Prof.Code § 4830.5 / § 4830.7
- ④ 콜로라도: C.R.S.A.§ 12-64-121 / § 18-9-209
- ⑤ 하와이: H R S § 471-18
- ⑥ 일리노이: 510 ILCS 70/3.07
- ⑦ 캔자스: KS ADC 70-8-1(p) / K.S.A. 21-6412 / K.S.A. 47-839
- ⑧ 메인: 7 M.R.S.A. § 4018
- ⑨ 메릴랜드: MD AGRIC § 2-313.1 / COMAR 15.14.15.03
- ⑩ 메사추세츠: M.G.L.A 112 § 58B

나) 동물학대 판례

(1) 방치되어 있던 세 마리의 저먼 셰퍼드⁴⁰⁾

- 2019년도에 저먼 셰퍼드 세 마리가 물과 음식에 접근할 수 없도록 묶여 있었고, 한 마리는 너무 단단히 묶여 다리가 부어올라 있었으며, 두 마리는 파리로부터 고통받고 있는 사례가 발생함. 법원은 파리로 고통받던 두 마리의 저먼 셰퍼드에 대해 보호자를 2급 경범죄로 유죄 판결을 내렸으며, \$100(2023.09.25.기준 133,650원)의 벌금 및 집행유예 180일, 두 마리의 강아지 소유권 포기, 한 마리의 정기적인 수의학적 치료 권고를 선고하였음.

(2) 극한 온도에 노출된 채로 자동차에 가두어져 있던 리트리버⁴¹⁾

- 2017년 높은 습도와 약 32°C의 외부 온도인 날에 보호자가 라브라도를 그늘이 없는 곳에 주차된, 창문이 열려있지 않은 자동차 안에다가 약 40분간 가두어 놓는 사례가 발생함. 법원은 6개월의 보호관찰 및 \$250(2023.09.25.기준 334,125원)의 벌금을 선고하였음.

40) Animal Legal&Historical Center, 2023.09.27.에 접근, <https://www.animallaw.info/case/state-v-agee>

41) Animal Legal&Historical Center, 2023.09.27.에 접근, <https://www.animallaw.info/case/state-v-graves>

다) 동물학대와 수의사

(1) 미국수의사회(American Veterinary Medical Association, AVMA)

- 미국수의사회는 수의학 직업의 모든 측면을 강화하고, 수의학적인 관점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의 정책 입안자들과 협력하는 단체임.⁴²⁾

[그림 7] 미국수의사회의 가치

	<p style="text-align: center;"><미국수의사회의 가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윤리적: 우리는 진실성, 정직성, 존경심을 가지고 행동한다. ▪ 포괄적: 우리는 독특한 관점을 가진 다양한 수의사 공동체를 대표하고 지원한다. ▪ 과학 기반: 우리는 과학을 선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며, 동물과 인간의 건강과 복지를 향상하기 위한 연구를 추진한다. ▪ 동물 중심: 우리는 수의사가 동물 건강, 복지 관리와 공중보건을 증진하도록 지원한다.
--	---

(출처: Valley Cottage Animal Hospital, <https://www.valleycottageanimalhospital.com/about-us>)

- 미국수의사회에서 제시하는 수의사의 신조는 다음과 같음.

“저는 수의사로서 과학적 지식과 기술을 동물의 건강과 복지를 추구하고, 고통을 예방하며, 동물자원 보존, 공중보건 증진, 수의학의 진전 등 사회의 이익을 위해 사용할 것임을 엄숙히 맹세합니다. 저는 수의학적 의료윤리 원칙에 따르며, 전문지식과 능력의 지속적인 향상을 위해 계속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 ‘학대 및 방치가 의심되는 동물 발견 시 수의사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지침’을 발간하여 동물학대 의심 사례 발견 시 수의사가 취해야 할 행동을 제시하고 있음.⁴³⁾ 수의사가 진료 시 직면할 수 있는 동물학대 상황으로는 방치, 애니멀 호딩, 투견, 고의적인 부상 등이 있으며,

42) American Veterinary Medical Association, 2023.09.25.에 접근, <https://www.avma.org/>

43) Practical Guidance for the Effective Response by Veterinarians to Suspected Animal Cruelty, Abuse and Neglect, Phil Arkow, Paula Boyden, Emily Patterson-Kane, American Veterinary Medical Association, 2011.02.04.
<https://ebusiness.avma.org/Files/ProductDownloads/AVMA%20Suspected%20Animal%20Cruelty.pdf>

각 의심 기준은 [표 6]과 같음.

[표 6] 수의사가 진료 시 직면할 수 있는 동물학대 상황

동물학대의 범주	의심 빈도	의심 기준
방치	가끔~흔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물의 몸·털상태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보호자가 정밀검사, 치료 및 털관리를 거부함. 보호자가 심각한 질병이나 부상을 완화하기 위한 치료나 안락사를 거부함.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이 부족함. 위험하거나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동물을 키움.
애니멀 호딩	가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물 수가 과도하게 많음. 치료를 연속적으로 진행하지 않음. 대부분 외상, 예방가능한 전염성 및 기생충성 질병으로 인해 내원함. 여러 동물병원을 이용함. 예후가 좋지 않은 동물을 살려달라고 요청함.
투견	지역에 따라 다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머리, 목, 다리에 특징적인 물린 상처가 있으며, 핏불 등 투견 품종에서 많이 나타남. 보호자가 자가치료를 시행함.
고의적인 부상	흔하지 않음~가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병력과 일치하지 않는 부상이 있음.

- 동물학대는 낮은 위험, 중간 위험, 높은 위험으로 구분할 수 있음. 임상 병력, 보호자 및 반려동물의 행동, 보호자 정보 등을 토대로 위험성 평가를 진행하여야 하며, 이때 보호자 설문지 등을 활용할 수 있음.

[표 7] 동물학대의 위험성 평가 및 처치 방법

위험성 평가	낮은 위험	중간 위험	높은 위험
임상 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일 상황 부상이 병력과 일치 생명이 위급하지 않은 상태 보호자 교육 부족, 자금 부족, 정당한 사정에 의해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복적이고 만성적인 상황; 보호자 교육을 통한 해결 실패 부상이 병력과 불일치 심각하나 생명이 위급하지 않은 상태 해결될 수 있거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복적이고 만성적인 상황; 이전에 키웠던 동물에 설명할 수 없는 부상 또는 사망 이력; 보호자 교육에 무반응 부상이 병력과 확실하게 불일치

		<p>해결되지 못하는 지속적인 문제가 나타나는 것으로 고의적 학대 추정 가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각하고 생명이 위급한 상태 ▪ 해결되지 않는 지속적인 문제가 나타나는 것은 고의적 학대 상황
보호자 행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자가 동물의 상태를 걱정, 상황 개선 의지 존재 ▪ 재정 상황, 정당한 사유에 의해 진료 지연 ▪ 후속 조치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자가 동물의 상태에 무관심, 상황 개선 의지 미비 ▪ 학대 은폐 시도로 인해 진료 지연 ▪ 후속 조치 미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자가 동물 상태 조연에 적대적, 상황의 개선 여지 부재 ▪ 학대를 숨기려고 진료를 노골적으로 거부 ▪ 후속 조치 미시행
반려동물 행동 (다른 항목 참고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자 곁에 있으며, 관심에 긍정적 반응 ▪ 일상 활동에 정상적인 반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자 존재 시 위축 ▪ 일상 활동에 비정상적 반응 가능성(예: 일부 사람들 앞에서 위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자 존재 때 불안 ▪ 일상 활동에 비정상적인 반응(예: 쓰다듬으려 하면 위축)
보호자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고객이며, 이전에 학대 의심 사유 부재 ▪ 기존 수의사와 진료 ▪ 적절한 수의 동물 유지, 일관된 이력 ▪ 동물 소유권 명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고객이거나 이전에 명확히 설명되지 않은 병력 존재 ▪ 새로운 수의사와 진료 선호 ▪ 동물이 과도하게 많거나, 빈번히 교체 ▪ 동물 소유권을 의도적으로 허위 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고객이거나 이전에 학대 우려가 있는 병력 존재 ▪ 새로운 수의사와 진료 선호 ▪ 동물이 과도하게 많거나, 빈번히 교체 ▪ 동물 소유권을 의도적으로 허위 표시
처리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단 결과 및 병력을 기록하여 의심되는 향후 사건이 적절하게 처리되도록 함. ▪ 동물보호에 관한 보호자 교육을 제공함. ▪ 보호자에게 지역 동물복지 및 사회복지기관에 관한 교육 및 자료를 제공함. ▪ 필요한 경우 동물복지 및 사회복지기관에 보호자를 소개함. ▪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이 의심되는 경우, 현행 의무 신고법 및 직업윤리 강령에 따라 적절한 사회복지기관에 신고함. ▪ 중간 및 높은 위험에 처한 경우, 현행 법률 및 직업윤리 강령에 따라 동물복지기관에 사례를 신고하는 것을 고려함. 		

<p>2. 배경</p>
<p>최근 연구 및 임상 증거에 따르면 동물학대 및 방치와 여러 형태의 가정폭력 사이의 연관성이 있음이 입증되었다. 동물복지와 공중보건에 영향을 미치는 동물학대 및 방치를 다루는 것은 수의사의 책임이며, 조기 개입을 통해 동물과 가족 구성원에 대한 추가 학대를 예방할 수 있다. 프로토콜은 동물, 보호자, 다른 가족 구성원의 상황 파악 방법과 교육 전략 개발, 동물학대 및 방치가 의심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역사회 기관에 의뢰하는 방법을 설명한다.</p>
<p>3. 정책</p>
<p>동물학대 및 방치가 의심되는 경우, 동물병원 종사자는 _____와 상의하여 해결 방법과 적절한 기관에 보고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만약 _____가 부재 시, _____에게 통지해야 한다.</p> <p>동물학대 및 방치 여부 결정은 복잡하고 개별적인 사건 또는 시간 경과에 따른 패턴을 포함할 수 있다. 법은 동물학대 및 방치에 대한 정확한 확신을 요구하지 않으며, 추가적인 조사 및 적절한 조치를 위해 당국에 보고를 요구한다.</p> <p>수의학 팀은 병력, 사진, 실험실적 결과, 방사선 촬영, 검사 기록 및 기타 모든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여 의심되는 동물학대 및 방치에 관한 정보를 문서화하고 환자 정보에 포함해야 한다.</p> <p>수의학 팀은 보호자에게 동물학대 및 방치로 의심되는 정황을 (통보 / 미통보) 할 것이다. 만약 당국이 추가 조사를 위해 동물을 격리하도록 동물병원에 지시할 경우, 보호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격리 비용과 치료, 실험실적 검사 등의 비용은 _____가 부담해야 한다. 당국이 조사하기 전 보호자가 동물을 데려가겠다고 요청한 경우, 동물을 반환하고 가정 조사를 시행하게 될 것이다.</p> <p>보호자의 폭력이 우려되는 경우, _____를 포함한 적절한 보안 조치를 취해야 한다.</p>
<p>4. 정의</p>
<p>동물학대 및 방치는 범죄이다. 주 법령에 따라, _____주의 다양한 형태의 동물 학대에 대한 법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물 학대: - 동물 방치: - 동물 성적 학대: - 기타: - 이러한 정의에서 제외되는 동물 (예: 해충, 곤충): - 이러한 정의에서 제외되는 상황 (예: 일반적인 축산 상황, 과학 연구):
<p>5. 정보 공유</p>
<p>_____주의 법률 및 수의학 규정에 따라 보호자 또는 동물에 관한 개인정보는 동물복지에 대해 심각한 우려가 있는 경우 법 집행 기관에 합법적으로 (공개 / 비공개) 된다. 동물과 가족 구성원의 학대 또는 방치 혐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수의사의 책임이 아니다. 수의사는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수집하고, 보호자 교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하며, 정당한 경우 기소 여부를 조사하고</p>

●●● 수의사 대상 동물학대 진료 경험 및 동물학대 대응체계 조사

결정하기 위해 관련 기관에 사건을 보고해야 한다. 동물병원 종사자는 동물학대 혐의 확인을 위해 형사 소송 시 증언을 제시해야 할 수 있다.

6. 우려사항 보고

의심되는 동물학대 및 방치를 조사하는 우리 지역 기관은 다음과 같다: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휴메인 소사이어티 (Humane Society)		
동물학대방지협회 (Society for the Prevention of Cruelty to Animals, SPCA)		
법 집행 기관 (경찰, 보안관)		
기타		

- 보고 절차: _____

[표 10] 동물학대 의심 보고서 양식 (예시)

동물병원 이름:	의심되는 동물학대 또는 방치에 대한 수의사 의뢰
보내는 이: 수의사 이름:	받는 이: 동물학대 조사관, 동물복지 기관
전화번호: 팩스: 이메일:	팩스: 이메일:
의뢰 정보: 1. 동물에 대한 의심 정황 <input type="checkbox"/> 학대 <input type="checkbox"/> 방치 2. 가족 구성원에 대한 우려 <input type="checkbox"/>	
보호자 이름:	보호자 전화번호:
가족 구성원이 기관에서 연락이 오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학대 정황 설명	
날짜:	시간:
설명 (필요에 따라 추가 페이지 첨부 가능):	

결과 보고서를 요청합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수의학 진료의 경우:	
이름:	제목:
증상:	
날짜:	

* 비공개 유지: 이 팩스는 수신자만을 위한 것이며 비공개 보고서입니다. 잘못 전송되었거나 문제가 있는 경우, 즉시 당사에 연락하여 내용이 공개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3) 영국의 사례

가) 동물학대 관련 법률

(1) 「동물복지법」⁴⁴⁾

- 제2조(보호동물)에 따르면 “보호동물”이란 영국에서 흔히 사육되는 동물이며, 영구적이든 일시적이든 인간의 통제하에 있고, 야생 상태에 살지 않는 동물을 의미함.
- 제3조(동물의 책임)에 따르면 “동물을 책임지는 사람”은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동물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을 의미함.
- 제4조(불필요한 고통), 제5조(손상), 제6조(개 꼬리 절단), 제7조(독극물 주입), 제8조(싸움 등), 제9조(동물복지를 위한 책임자의 의무)에는 동물에게 해를 입히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제32조(징역 또는 벌금), 제33조(박탈), 제34조(실격)에 따라 규제받고 있음.

[표 11] 「동물복지법」상의 동물에게 해를 입히는 경우 및 위반사항

제4조(불필요한 고통)	제32조(징역 또는 벌금), 제33조(박탈), 제34조(실격)
1. 인간의 행위 또는 행위의 실패로 인해 보호동물이 고통을 받을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고통이 가해진 경우, 위반사항임.	▪ 즉결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사법재판소의 일반적 제한(12개

44) Animal Welfare Act, 시행 2019.06.08.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2006/45/cont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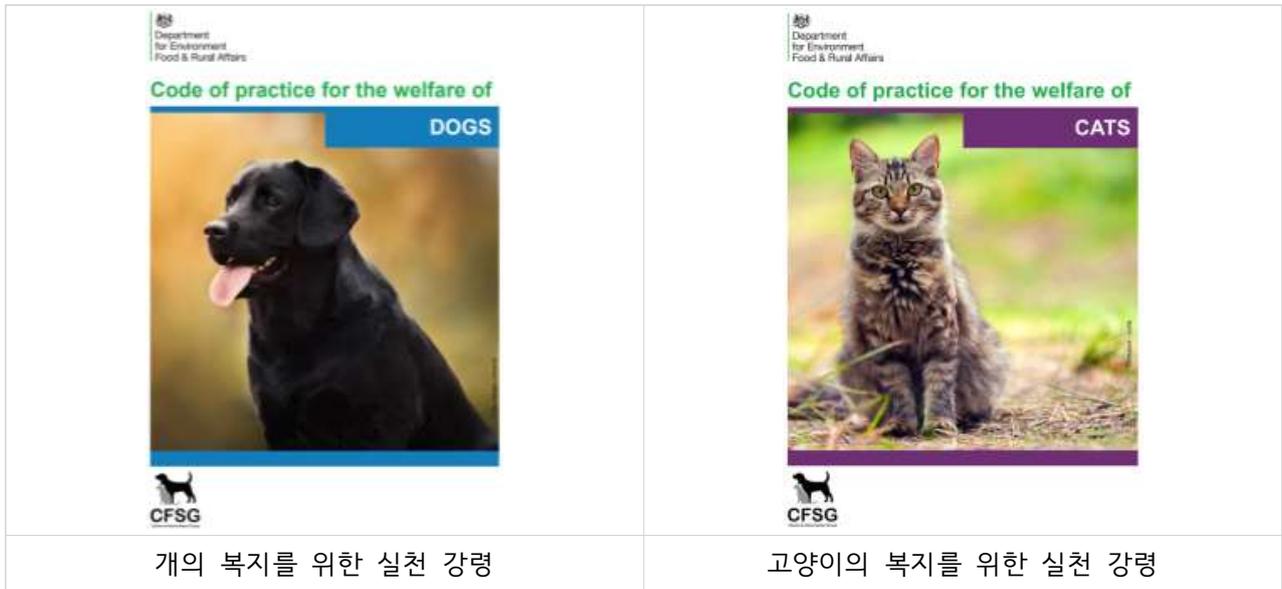
45) The Judicial Review and Courts Act 2022 (Magistrates' Court Sentencing Powers) Regulations 2023,

<p>2. 보호동물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고통을 발생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 다른 사람의 행위 또는 행위의 실패로 인해 고통이 가해진 경우, 위반사항임.</p> <p>3. 불필요한 고통의 판단 여부는 다음과 같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통을 합리적으로 피하거나 줄일 수 있었는지 여부 ㉡ 고통 행위가 법률 및 실천 강령의 조항을 준수하였는지 여부 ㉢ 고통을 초래한 행위가 정당한 목적이었는지 여부: 동물의 이익을 위한 목적, 사람·재산·동물 보호 목적 ㉣ 고통이 해당 행위의 목적에 비례하는지 여부 ㉤ 고통 행위가 인도적 처리가 가능한 사람이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졌는지 여부 	<p>월의 징역)을 초과하지 않는 징역형, 벌금 또는 둘 다에 처함.⁴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소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벌금 또는 둘 다에 처함. ■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위반과 관련된 동물의 소유자인 경우, 다른 형을 처하기 전에 소유권 박탈을 명할 수 있음. ■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동물의 소유·보호·사육·거래·운송 자격 박탈을 명할 수 있음.
<p>제5조(손상)</p>	
<p>1. 보호동물에게 금지된 절차를 수행하는 경우, 위반사항임.</p> <p>2. 동물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금지된 절차가 수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위반사항임.</p> <p>3. “금지된 절차”란 치료목적이 아님에도 동물의 민감한 조직이나 뼈 구조에 영향을 주는 절차를 수행한 것을 뜻함.</p>	
<p>제6조(개 꼬리 절단)</p>	
<p>1. 치료목적이 아님에도 개의 꼬리 전체나 일부를 절단하는 경우, 위반사항임.</p> <p>2. 동물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개의 꼬리 전체나 일부를 절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위반사항임.</p>	
<p>제7조(독극물 주입)</p>	
<p>1. 물질이 보호동물에게 독성이 있거나 유해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투여할 경우, 위반사항임.</p> <p>2. 동물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독성 또는 유해한 물질 투여를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위반사항임.</p>	
<p>제8조(싸움 등)</p>	
<p>1. 동물싸움을 일으키거나, 동물싸움 관람비를 받거나, 공표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또는 동물싸움에 참여하거나, 참여를 위해 동물을 훈련하거나, 동물싸움을 위한 장소를 보관하고 있는 경우, 위반사항임.</p> <p>2. 동물싸움을 녹화한 영상을 제공하고 출판한 경우, 위반사항임.</p>	
<p>제9조(동물복지를 위한 책임자의 의무)</p>	
<p>1. 동물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을 모범 사례에 의해 요구되는 범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1주 이하의 징역, 표준 척도에서 레벨5(£5,000,

<p>내에서 동물의 욕구가 충족되도록 보장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위반사항임.</p> <p>㉓ 적합한 환경에 대한 욕구 ㉔ 적합한 식단에 대한 욕구 ㉕ 정상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는 욕구 ㉖ 사회화에 대한 욕구 ㉗ 고통, 통증 부상, 질병으로부터 보호</p>	<p>2023.09.25.기준 8,182,650원)를 넘지 않는 벌금 또는 둘 다에 처함.⁴⁶⁾⁴⁷⁾</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위반과 관련된 동물의 소유자인 경우, 다른 형을 처하기 전에 소유권 박탈을 명할 수 있음. ▪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동물의 소유·보호·사육·거래·운송 자격의 박탈을 명할 수 있음.
--	---

○ 제13조(실천 강령)에 따르면 당국은 동물복지법의 모든 조항과 관련한 실질적인 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실천 강령을 발행할 책임이 있으며, 실천 강령에 기재된 조항을 준수하지 않은 사람은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⁴⁸⁾⁴⁹⁾

[그림 8] 개, 고양이의 복지를 위한 실천 강령



(출처: Code of practice for the welfare of Dogs / Cats, 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Rural Affairs)

<https://www.legislation.gov.uk/uksi/2023/149/schedule/part/1/made>
 46) Criminal Justice Act 1991, 개정 2020.12.01.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1991/53/section/17>
 47) 2023.09.25.기준 £1의 환율은 한화 1,637.15원임.
 48) Code of practice for the welfare of Dogs, Canine&Feline Sector Group, 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Rural Affairs, 2017.12.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code-of-practice-for-the-welfare-of-dogs>
 49) Code of practice for the welfare of Cats, Canine&Feline Sector Group, 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Rural Affairs, 2017.12.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code-of-practice-for-the-welfare-of-cats>

●●● 수의사 대상 동물학대 진료 경험 및 동물학대 대응체계 조사

- 제18조(위험에 처한 동물과 관련된 권한)에 따르면 검사관이나 경찰은 보호동물이 고통을 겪고 있다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면, 고통 경감을 위해 즉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 수의사가 동물이 고통받고 있고, 상황이 바뀌지 않으면 지속적인 고통이 가해질 것이라는 내용을 담은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검사관이나 경찰이 보호동물을 소유할 수 있으며, 수의사는 증명을 위해 동물의 검사와 검체 채취를 할 수 있음. 동물을 소유한 경우, 제20조에 따라 법원은 치료를 진행하거나, 동물의 소유권을 양도하는 등의 명령을 내릴 수 있음.
- 제19조(제18조의 목적을 위한 수색)에 따르면 검사관이나 경찰은 보호동물이 고통받고 있거나 상황이 변하지 않으면 고통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수색을 위해 개인 주거지를 제외한 건물의 출입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음.

나) 동물학대 판례⁵⁰⁾

- 2019년도 「동물복지법」 위반 사례는 총 1,341건으로, 제4조(불필요한 고통)를 위반한 사례가 757건(56.5%), 제5조(손상)를 위반한 사례가 3건(0.2%), 제6조(개 꼬리 절단)를 위반한 사례가 2건(0.1%), 제7조(독극물 주입)를 위반한 사례가 1건(0.1%), 제9조(동물복지를 위한 책임자의 의무)를 위반한 사례가 531건(39.6%), 제34조(실격)를 위반한 사례가 47건(3.5%)임.

[표 12] 2019년도 영국의 「동물복지법」 위반 사례

(단위: 건, 비율(%))

분류	사례	비율(%)
제4조(불필요한 고통) 위반	757	56.5
제5조(손상) 위반	3	0.2
제6조(개 꼬리 절단) 위반	2	0.1
제7조(독극물 주입) 위반	1	0.1
제9조(동물복지를 위한 책임자의 의무) 위반	531	39.6
제34조(실격) 위반	47	3.5
합계: 「동물복지법」 위반	1,341	100

50) RSPCA Prosecutions Annual Report 2019, 2023.09.27.에 접근,
<https://www.rspca.org.uk/whatwedo/endcruelty/prosecution>

(1) 수척한 채로 공원을 돌아다니던 도베르만

- 11세 도베르만이 갈비뼈와 엉덩이뼈, 척추가 선명하게 보일 정도로 수척한 채로 공원에 돌아다니는 것을 한 남성이 발견함. 도베르만의 눈은 움푹 들어가 있었고, 두개골 한 부분은 피부를 뚫고 들어가 궤양이 일어남. 경찰에 의해 구조되어 동물병원에서 검사받은 결과, 신체상태 점수(Body Condition Score, BCS)가 9점 만점에 1.5점이었으며, 곧바로 치료와 재활을 받음.

[그림 9] 학대받은 도베르만의 치료 전후 사진



(출처: RSPCA, <https://www.rspca.org.uk/whatwedo/endcruelty/prosecution>)

- 도베르만의 마이크로칩을 확인하여 보호자를 처벌함. 보호자는 수의사에게 동물을 데려가겠다고 주장하였으나, 사육 금지명령이 내려짐.

- 위반: 「동물복지법」 제4조(불필요한 고통)
- 판결: 유죄 1건
- 판결문:
 - 무기한 동물 사육 금지
 - 6개월간 알코올 치료 명령
 - 피해건을 위한 5일간의 재활비 지급
 - £120(2023.09.25.기준 196,458원)의 벌금; £300(2023.09.25.기준 491,145원)의 비용

●●● 수의사 대상 동물학대 진료 경험 및 동물학대 대응체계 조사

(2) 보호자에 의해 구타당한 고양이

- 취한 보호자가 고양이를 구타하여 영국 왕립동물학대방지협회(Royal Society for the Prevention of Cruelty to Animals, RSPCA)가 출동하여 구조함. 고양이의 얼굴은 피투성이였고, 호흡수가 빠르고, 오른쪽 눈과 양쪽 코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음.

[그림 10] 학대받은 고양이의 치료 전후 사진



구조 직후의 고양이



치료 이후의 고양이

(출처: RSPCA, <https://www.rspca.org.uk/whatwedo/endcruelty/prosecution>)

- 보호자는 「동물복지법」 위반으로 처벌되었으며, 10년간 사육 금지명령이 내려짐.

- 위반: 「동물복지법」 제4조(불필요한 고통)
- 판결: 유죄 1건
- 판결문:
 - 10년간 동물 사육 금지
 - 18개월 조건부 석방
 - £400(2023.09.25.기준 654,860원)의 비용

다) 동물학대와 수의사

(1) 왕립수의학기관(Royal College of Veterinary Surgeons, RCVS)

- 왕립수의학기관은 수의사의 교육적, 윤리적, 임상적 기준에 대한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영국에서 수의사로 활동하고자 하는 사람은 기관에 등록해야 함.⁵¹⁾

[그림 11] 왕립수의학기관의 미션

	<p style="text-align: center;"><왕립수의학기관의 미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의학적 기준 세우고, 지지하고, 발전시킴. ▪ 임상과 비임상 수의학 장려하고, 발전시킴. ▪ 동물의 건강과 복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일들을 함.
---	--

(출처: Vettimes, <https://www.vettimes.co.uk/news/royal-college-dismisses-dodgy-insurance-claim-case/>)

- 왕립수의학기관에서 제시하는 수의사의 신조는 다음과 같음.

“저는 제가 맡은 일에 성실히 임하고, 대중과 보호자, 직업, 왕립 수의과대학에 저의 책임을 받아들일 것을 약속하고 엄숙히 선언합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제 치료를 받는 동물들의 건강과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 왕립수의학기관에서 발간한 「수의사 직업 행동 강령 지침」 제14조(보호자의 기밀 유지)에서는 동물학대 의심 사례가 발생한 경우 수의사가 올바르게 당국에 보고하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음.⁵²⁾

[표 13] 왕립수의학기관의 「수의사 직업 행동 강령 지침」

제14조(보호자의 기밀 유지)
보호자 정보를 당국에 공개
<p>14.11 보호자가 정보 공개를 동의하지 않았지만, 수의사와 테크니션이 동물복지 또는 공익이 우려되는 상황이면 보호자의 기밀이 침해될 수 있으며, 당국에 적절한 정보를 보고할 수 있음.</p> <p>㉓ 동물에서 학대의 흔적이 보이는 경우</p>

51) The Royal College of Veterinary Surgeons, 2023.09.25.에 접근, <https://www.rcvs.org.uk/home/>

52) Supporting guidance, The Royal College of Veterinary Surgeons, 2023.09.25.에 접근, <https://www.rcvs.org.uk/setting-standards/advice-and-guidance/code-of-professional-conduct-for-veterinary-surgeons/supporting-guidance/>

- ㉞ 맹견이 안전에 위협을 주는 경우
- ㉟ 아동학대나 가정폭력이 의심되는 경우
- ㊱ 잉글랜드의 경우 브리더가 면허를 보유하지 않았거나, 면허 조건을 위반한 채로 강아지를 데리고 온 경우
- ㊲ 정보가 범죄의 예방, 탐지 또는 기소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㊳ 공중 또는 개인의 보건과 안전에 중대한 위협이 있는 경우

14.12 일반적으로, 불법적인 행위를 했다고 의심하는 제3자의 정보(소문)가 아닌 개인적인 지식에 의해 결정해야 함. 동물복지나 공익이 훼손될수록, 수의사나 테크니션은 당국에 정보 공개 준비를 해야 함.

14.13 각 사례는 특정 상황에 따라 결정되어야 함. 동의 없는 정보 공개가 정당한지 여부에 의문이 있는 경우, 경험이 풍부한 동료와 문제를 논의해야 하며, 당국 기관·협회로부터 조언을 구할 수 있음.

14.14 가능하면 수의사 및 테크니션은 보호자의 기밀 유지 조항을 위반하기 전에 경험있는 선임 수의사와 논의하는 것이 좋음.

14.15 모든 정보 공개는 동물복지 또는 공익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로 제한되어야 함.

14.16 보호자 정보를 공개하기로 한 경우, 수의사 또는 테크니션은 정당화 여부를 고려하여 사례를 포괄적으로 문서화해야 함. 결정을 뒷받침하는 사진 또는 영상 증거를 추가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으며, 본 지침을 인용하는 것도 가능함.

동물복지 문제

14.18 동물복지가 침해되는 경우 공개가 정당화될 수 있음.

14.19 동물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또는 동물이 방치된 것으로 보이는 경우, 보호자가 다음 동물병원 방문 예정일에 오지 않는 경우 등이 동물복지를 훼손할 수 있음.

14.20 수의사는 보호자가 제공한 병력과 맞지 않는 다친 동물을 발견하였을 때는 비사고적 상해(고의적 상해)를 감별진단에 포함해야 함.

14.21 검사 결과 동물학대(방치 포함)가 의심되는 경우, 수의사는 1차적으로 보호자에게 우려 사항에 대한 논의를 시도해야 함. 보호자가 다음 동물병원 방문 예정일에 오지 않은 경우, 다른 병원에서 수의학 치료를 받았을 수 있으므로 진단서 요청이 접수되었는지 확인하는 것도 합리적인 방법임.

14.22 논의가 불가능한 경우, 또는 보호자가 우려 사항을 완화하기보다는 증가시키는 경우, 수의사는 보호자의 정보를 동의 없이 공개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상황이 심각한지 고려해야 함. 심각한 경우, 학대 의심 정황을 당국에 보고해야 함.

14.23 보고는 동물학대의 징후를 보이거나 학대가 실제적이고 즉각적인 위협을 보이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수의사 또는 테크니션의 판단하에 수행되어야 함; 동물보호에 관한 공익이 보호자의 기밀을 유지하는 것보다 직업 의무적으로 우위인 경우, 보호자의 개인정보 공개의 정당성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권리보다 우위인 경우가 포함됨.

14.24 동물이 사망한 경우 즉각적인 위협이 없어 동물복지 정당성이 적용되지 않음. 하지만 수의사 및 테크니션은 보호자가 데리고 있는 다른 동물에 대한 위협을 고려해야 함.

14.25 동물이 사망한 경우에도 공익을 위해 당국에 공개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음.

14.26 수의사는 보호자 정보가 당국에 공개되는 경우 부검을 목적으로 사체를 보관할 수 있음.

다. 수의사 대상 동물학대 관련 조사

- 조사 항목 중 항목 간 내용이 연계되는 경우 일차적으로 자료수집 담당자가 내용을 점검하고 이차적으로 통계 조사 관리자가 검토하여 이상값을 처리함.
- 항목 간 논리적 오류가 발견되는 경우 조사원들 간의 논의를 거쳐 이상값을 처리하고, 결과를 산출하였음.

1) 응답자 인적 사항

가) 연령

- 응답자 연령대는 30대~50대가 94.1%로 대부분 청장년층에 해당함.

[표 14] 응답자 연령 분포

(단위: 명, 비율(%)*)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합계
5 (2.7%)	63 (34.1%)	79 (42.7%)	32 (17.3%)	6 (3.2%)	185

*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합계가 100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이후 결과에서도 동일하게 처리함.

나) 성별

- 응답자의 성비는 남성 53.0%, 여성은 45.4%로 남성의 비율이 7.6%p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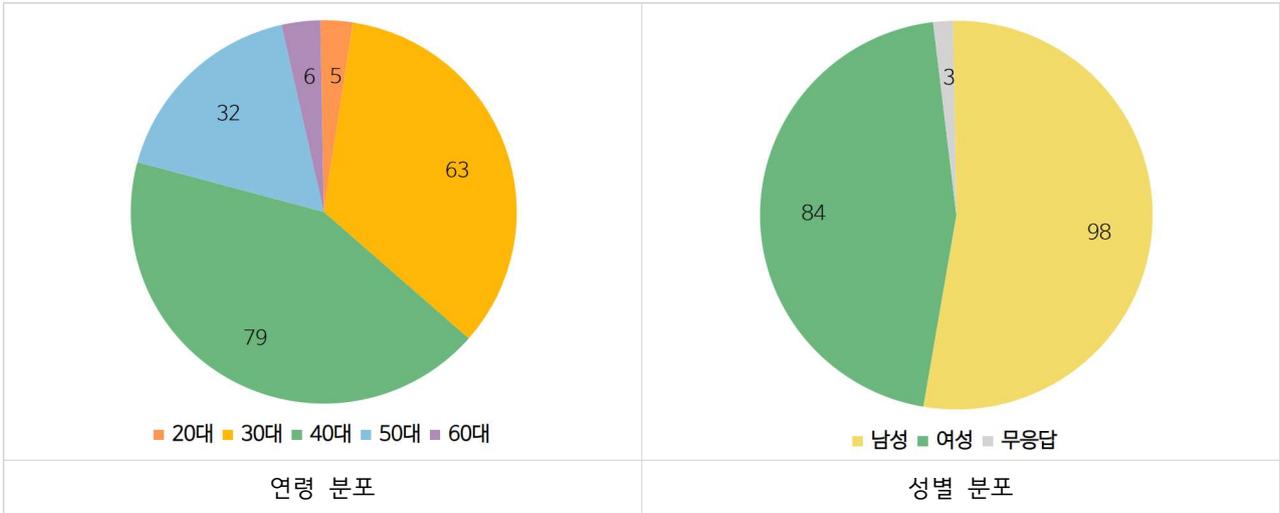
[표 15] 응답자 성별 분포

(단위: 명, 비율(%))

남성	여성	무응답	합계
98 (53.0%)	84 (45.4%)	3 (1.6%)	185

[그림 12] 응답자 연령 분포 및 성별 분포

(단위: 명)



다) 임상 경력

- 응답자 임상 경력 기간은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으며, 5년~10년이 52명(28.1%)으로 가장 많고, 이어서 10년~15년 45명(24.3%), 20년 이상 34명(18.4%) 순임.

[표 16] 응답자 임상 경력

(단위: 명, 비율(%))

1년 미만	1년~5년	5년~10년	10년~15년	15년~20년	20년 이상	합계
2 (1.1%)	26 (14.1%)	52 (28.1%)	45 (24.3%)	26 (14.1%)	34 (18.4%)	185

라) 임상 활동 여부⁵³⁾

- 응답자 185명 중 조사 시점 기준 179명(96.8%)이 임상수의사로 근무하고 있었음.

53) 조사 시점 기준으로 현재(2023.11.)와 결과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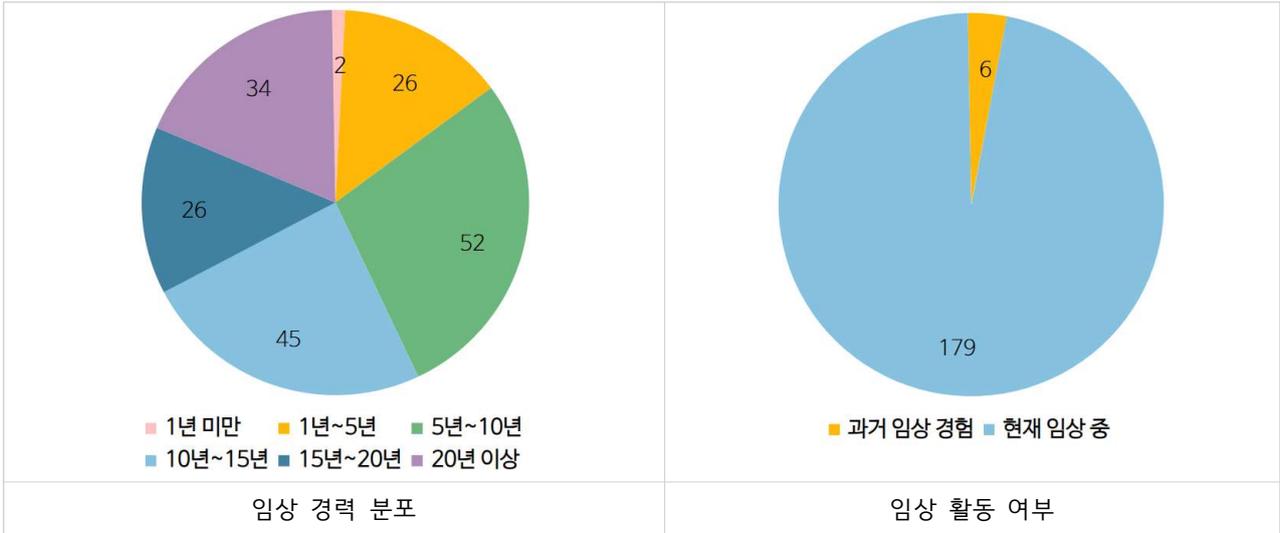
[표 17] 응답자 임상 활동 여부

(단위: 명, 비율(%))

과거 임상 경험	현재 임상 중	합계
6 (3.2%)	179 (96.8%)	185

[그림 13] 응답자 임상 경력 및 임상 활동 여부

(단위: 명)



마) 임상 활동 지역

- 응답자 근무 지역은 서울이 87명, 경기 71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서 대전 15명, 부산 14명, 인천 11명, 대구 9명, 전북 7명 순임. 기타 지역은 고르게 2명~6명으로 분포되어 있음.

[표 18] 응답자 임상 활동 지역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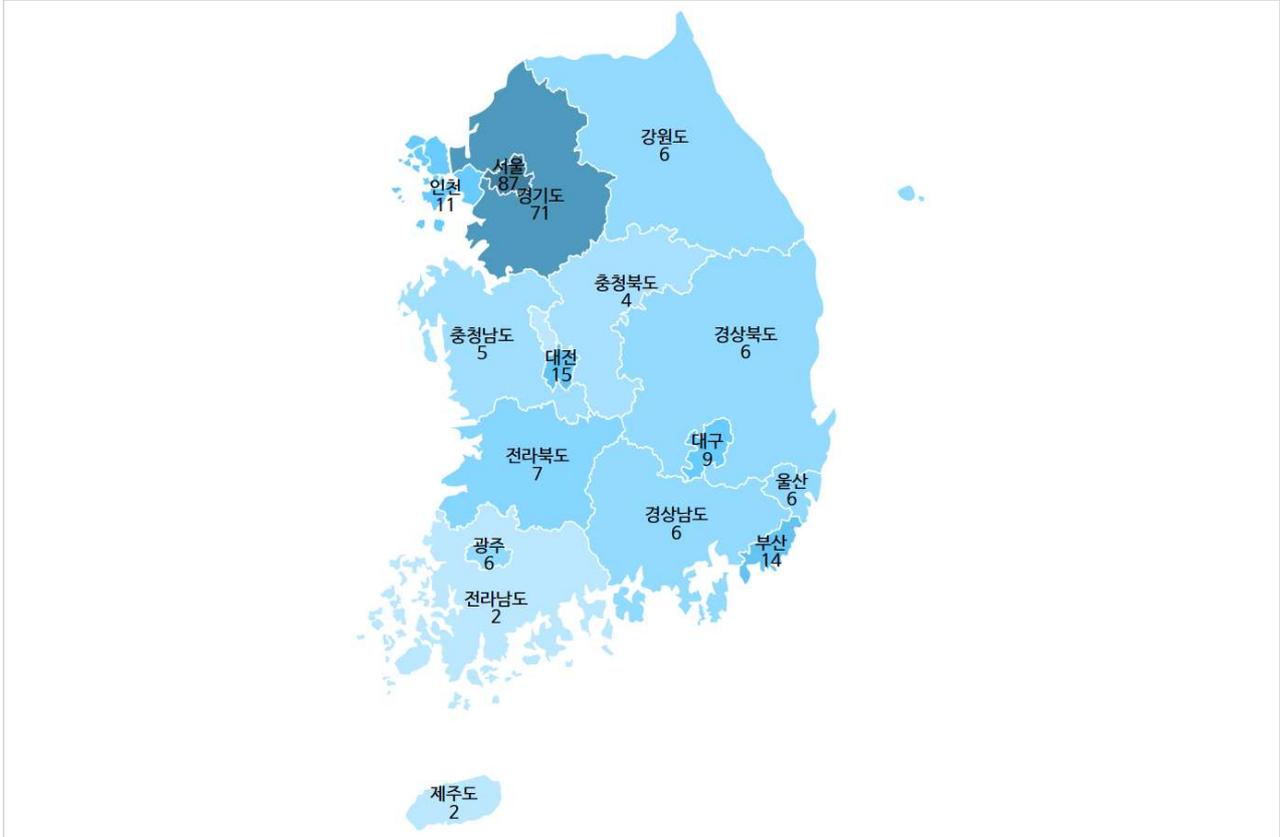
(단위: 명*)

서울	경기	인천	강원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충북	충남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울산	세종	제주
87	71	11	6	6	6	7	2	4	5	6	9	15	14	6	2	2

* 과거 임상 근무를 했던 지역을 포함하여 복수 응답 처리하였음.

[그림 14] 응답자 임상 활동 지역 분포

(단위: 명)



바) 임상 직책

- 응답자 중 원장 직책의 수의사가 111명, 통상근로자⁵⁴⁾ 수의사(이하 풀타임 고용 수의사) 91명, 단시간근로자⁵⁵⁾ 수의사(이하 파트타임 고용 수의사)에는 28명이 해당함.

[표 19] 응답자 임상 직책 분포

(단위: 명*)

원장	풀타임 고용 수의사	파트타임 고용 수의사
111	91	28

* 과거 직책을 포함하여 복수 응답 처리하였음.

54) 통상근로자란 당해 업무에 중심적 업무에 종사하는 풀타임 근로자를 포함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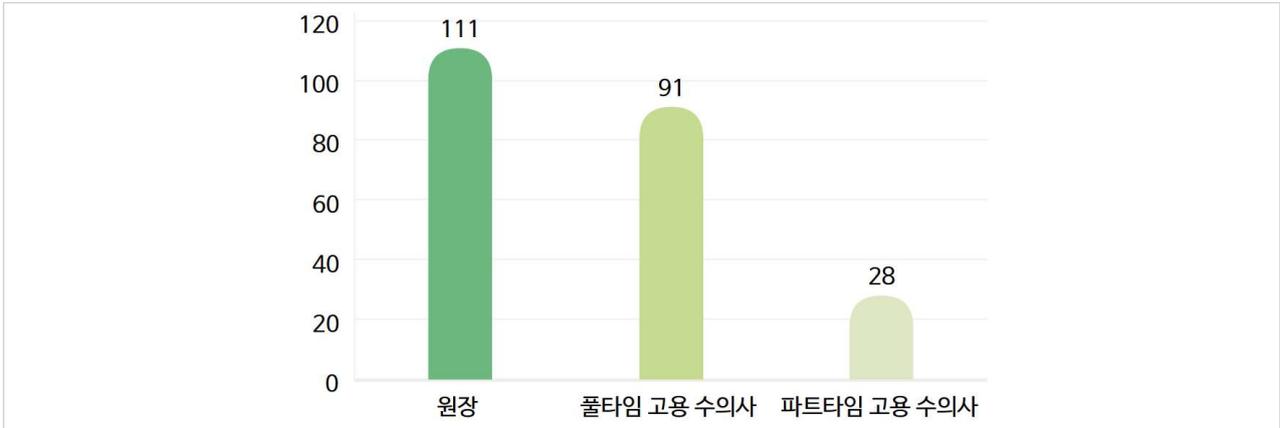
55) 단시간근로자란 통상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함.

실무노동용어사전, (주)중앙경제, 2014, <http://www.elabor.co.kr/>

근로기준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1.5.18., <https://www.law.go.kr/LSW/main.html>

[그림 15] 응답자 임상 직책 분포

(단위: 명)



2) 동물학대 진료 관련 조사

가) 과거 동물학대(의심) 진료 경험

(1) 과거 동물학대(의심) 진료 경험 여부

- 응답자 185명 중 상당수인 175명(94.6%)의 수의사가 동물학대(의심) 환자의 진료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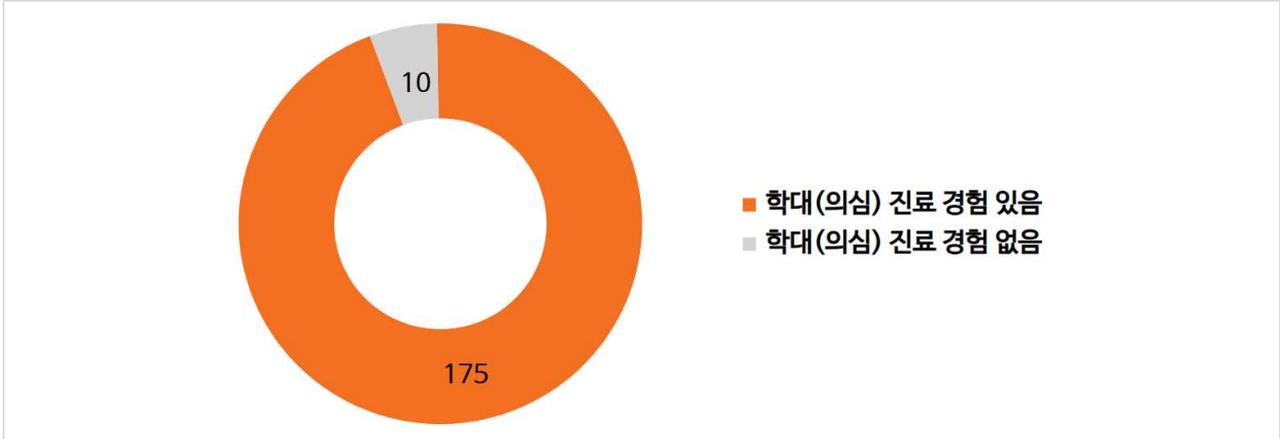
[표 20] 동물학대(의심) 진료 경험 여부

(단위: 명, 비율(%))

학대(의심) 진료 경험 있음	학대(의심) 진료 경험 없음	합계
175 (94.6%)	10 (5.4%)	185

[그림 16] 동물학대(의심) 진료 경험 여부

(단위: 명)



(2) 과거 동물학대(의심) 진료 경험 횟수

- 횟수는 보수적으로 집계하였으며(예: 3~5회인 경우 3회로 처리함), n회 미만과 같이 정확한 값을 알 수 없는 경우와 이상값(outlier)인 경우 통계 처리에서 제외하였음.
- 평균 5.3회(표준편차 4.0) 동물학대(의심) 진료 경험이 있었음.
- 경력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평균 1회 학대(의심) 환자 진료 경험이 있었으며, 1년~5년인 경우 평균 2.3회, 5년~10년인 경우 평균 4.4회, 임상 기간이 10년 이상인 수의사의 경우 평균 6회~7회 동물학대(의심) 진료 경험이 있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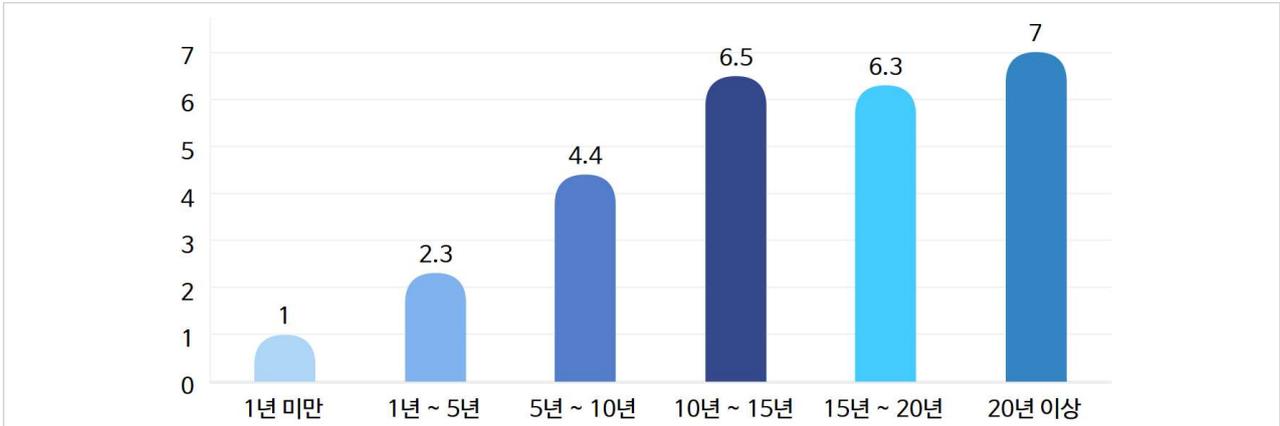
[표 21] 경력

(단위: 회)

평균	1년 미만	1년~5년	5년~10년	10년~15년	15년~20년	20년 이상
5.3	1	2.3	4.4	6.5	6.3	7

[그림 17] 경력 기간별 평균 동물학대(의심) 진료 경험 횟수

(단위: 회)



(3) 최근 2년 동안 동물학대(의심) 진료 경험 횟수

- 횟수는 보수적으로 집계하였으며(예: 3~5회인 경우 3회로 처리함), 이상값(outlier)인 경우 통계 처리에서 제외하였음.
- 수의사들은 최근 2년 동안 평균 1.7회(표준편차 1.3) 동물학대(의심) 진료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4) 동물학대(의심) 상해의 종류

- 상해 조사는 학대(의심) 진료 경험이 없거나, 무응답, 사망 등으로 상해 분류를 포함하기 어려운 경우는 집계에서 제외하여 응답자 169명의 집계 결과임.
- 학대(의심)로 인한 가장 많은 상해 진료 경험은 혈종이나 골절 등의 근골격계 손상 114명으로 67.5%에 해당하는 수치이며, 이어서 각막 손상, 안구돌출 등의 안과 병변이 80명(47.3%), 뇌진탕이 70명(41.4%), 피부 손상이 65명(38.5%), 영양실조 58명(34.3%), 폐출혈이 57명(33.7%) 순으로 응답하였음. 이외에도 복부 장기 손상 23명(13.6%), 신경계 손상이 16명(9.5%), 기도 손상으로 인한 호흡곤란 5명(3.0%), 생식기나 항문 손상 사례 진료 경험이 있는 수의사가 4명(2.4%)으로 조사되었음.

●●● 수의사 대상 동물학대 진료 경험 및 동물학대 대응체계 조사

[표 22] 동물학대(의심) 상해 종류

(단위: 명,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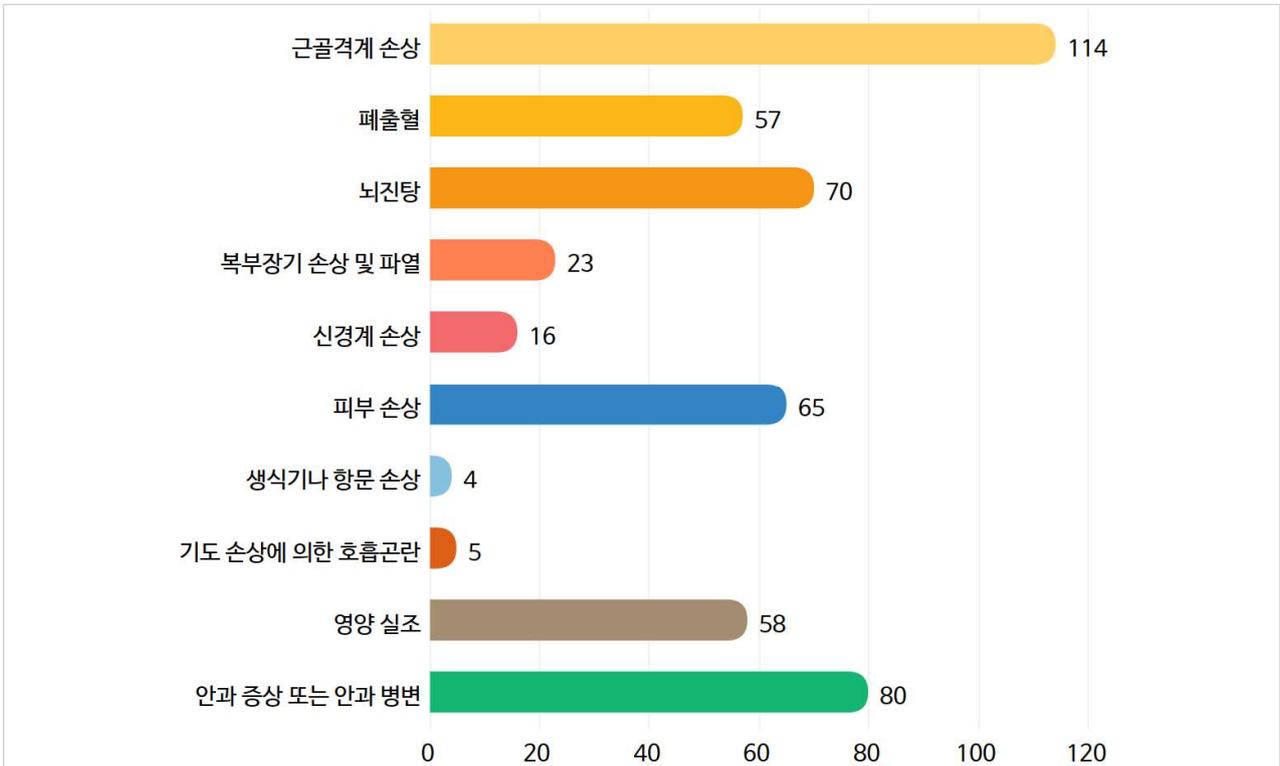
상해 종류	응답자 수	응답자 비율(%)
근골격계 손상 (혈종, 골절 등)	114	67.5
폐출혈	57	33.7
뇌진탕	70	41.4
복부 장기 손상 및 파열	23	13.6
신경계 손상 (하반신 마비 등)	16	9.5
피부 손상 (화상, 자상, 열상, 찰과상 등)	65	38.5
생식기나 항문 손상	4	2.4
기도 손상에 의한 호흡 곤란	5	3.0
영양 실조	58	34.3
안과 증상 또는 안과 병변**	80	47.3

* 복수 응답 처리하여 비율의 합은 100%가 아니며, 비율은 응답자 169명에 대한 해당 상해 비율을 나타냄

** 안과 병변: 결막하 출혈, 각막 손상, 안구 파열, 안구돌출 등을 포함함.

[그림 18] 동물학대(의심) 상해 종류

(단위: 명)



(5) 피학대(의심) 동물의 내원 당시 환자의 상태

- 피학대(의심) 동물의 내원 환자 상태는 앞선 문항과 달리 무응답이 없어, 총 185명 중 학대(의심) 동물의 진료 경험이 없는 10명을 제외한 175명에 대한 집계 결과임.
- 동물학대(의심) 환자의 상태 조사에서 전치 3주 이하의 경상 환자를 진료한 경험이 있는 수의사가 110명(62.9%), 전치 4주 이상의 중상을 입은 환자 진료 경험 수의사가 107명(61.1%)이며, 학대(의심)으로 환자가 사망하였다고 응답한 수의사가 35명으로 이는 응답자의 20.0%에 해당하는 수치임.

[표 23] 동물학대(의심) 환자의 상해 정도

(단위: 명, 비율(%)*)

상해 정도	응답자 수	응답자 비율(%)
과거 학대 의심 흔적은 있지만 진료 당시에는 이상 없음.	19	10.9
경상 (전치 3주 이하)	110	62.9
중상 (전치 4주 이상)	107	61.1
사망	35	20.0

* 복수 응답 처리하여 비율의 합은 100%가 아니며, 비율은 응답자 175명에 대한 상해 정도 비율을 나타냄.

(6) 피학대(의심) 동물의 진료 이후 환자의 상태

- 진료 이후 환자 상태에 대한 문항의 경우, 학대(의심) 진료 경험이 없는 경우와 무응답을 제외한 174명의 수의사가 응답하였음. 이 중 진료 이후 환자가 회복 및 완치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수의사는 145명(83.3%), 상태가 호전되지도 악화되지도 않은 경우 18명(10.3%), 환자의 증세가 악화된 경우 32명(18.4%), 학대(의심)으로 환자가 사망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수의사가 60명(34.5%)이었음.
- 내원 당시 환자 상태를 ‘사망’으로 응답한 35명 중 진료 이후 환자 상태에도 ‘사망’으로 응답한 경우가 31명임. 응답자 중 일부는 내원 당시 ‘사망’ 상태인 환자를 진료 이후 상태에도 ‘사망’으로 중복으로 답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이러한 오인 가능성을 고려하더라도 내원 시 ‘중상’에서 진료 이후 ‘사망’으로 응답한 경우가 29명으로 적지 않은 수치임.

●●● 수의사 대상 동물학대 진료 경험 및 동물학대 대응체계 조사

[표 24] 진료 이후 환자의 상태

(단위: 명, 비율(%)*)

증세 호전	상태 변화 없음	증세 악화	사망
145 (83.3%)	18 (10.3%)	32 (18.4%)	60 (34.5%)

* 복수 응답 처리하여 비율의 합은 100%가 아니며, 비율은 응답자 174명에 대한 해당 상태 비율을 나타냄.

[그림 19] 동물학대(의심) 환자의 상태

(단위: 명)



* 진료 이후 상태 '사망' 응답자 60명 중에는 내원 직후 사망한 경우도 다소 포함될 수 있음.

(7) 동물학대(의심) 가해자

- 동물학대(의심) 가해자 문항은 총 185명 중 학대(의심) 동물 진료 경험이 없는 경우를 제외한 175명이 응답하였고, 이 중 가해자로 의심되는 사람으로는 보호자(반려인)이 117명(66.9%)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였고, 이어서 가족이나 동거인, 지인 등의 보호자 주변인이 105명(60.0%) 순으로 이는 동물학대는 피학대 동물과 가까운 관계에서 일어날 가능성을 보여주는 결과임.

[표 25] 학대 의심 가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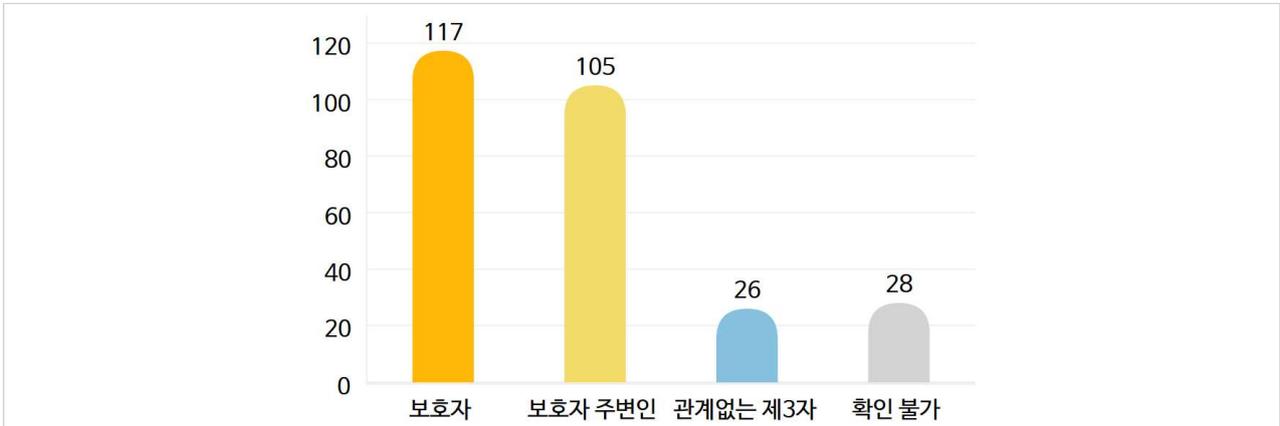
(단위: 명, 비율(%)*)

보호자 (반려인)	보호자 주변인 (가족, 동거인, 지인 등)	직접적 관계없는 제3자	확인불가
117 (66.9%)	105 (60.0%)	26 (14.9%)	28 (16.0%)

* 복수 응답 처리하여 비율의 합은 100%가 아니며, 비율은 응답자 175명에 대한 해당 상해 비율을 나타냄.

[그림 20] 동물학대(의심) 가해자

(단위: 명)



나) 과거 동물학대(의심) 대응

(1) 과거 동물학대(의심) 시 신고 등의 조치

- 동물학대(의심) 진료 경험이 없는 경우를 제외한 175명이 응답하였음.
- 동물학대(의심) 진료에 대하여 실제 신고를 하였다고 응답한 경우는 11명(6.3%)으로 신고 비율은 다소 저조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표 26] 동물학대(의심) 신고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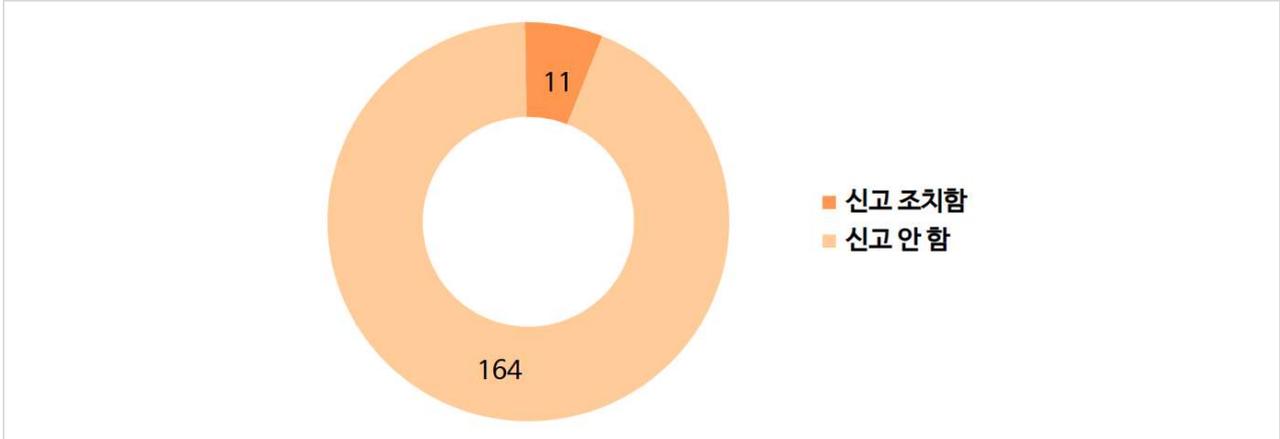
(단위: 명, 비율(%)*)

신고 조치함	신고 안 함	합계
11 (6.3%)	164 (93.7%)	175

* 비율은 응답자 175명에 대한 신고 비율을 나타냄.

[그림 21] 동물학대(의심) 신고 여부

(단위: 명)



○ 성별에 따른 동물학대(의심) 신고 여부는 남성이 45.5%로 여성 45.5%와 같은 비율로 조사되어, 성별에 따라 신고율이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음.

[표 27] 성별 학대 의심 신고

(단위: 명, 비율(%)*)

남성	여성	성별 무응답	합계
5 (45.5%)	5 (45.5%)	1 (9.1%)	11

* 비율은 응답자 11명에 대한 신고 비율을 나타냄.

○ 연령별 동물학대(의심) 신고 비율은 40대(36.4%) 비율이 가장 높고, 이어서 30대(27.3%)와 50대(27.3%) 비율이 높으며, 60대(9.1%) 순으로 조사되었음. 응답자 중 30대에서 50대 응답자가 신고율이 현저히 높은 것으로 보이거나, 이는 응답자 연령 비율과 비슷한 양상으로 나이에 따른 신고 비율의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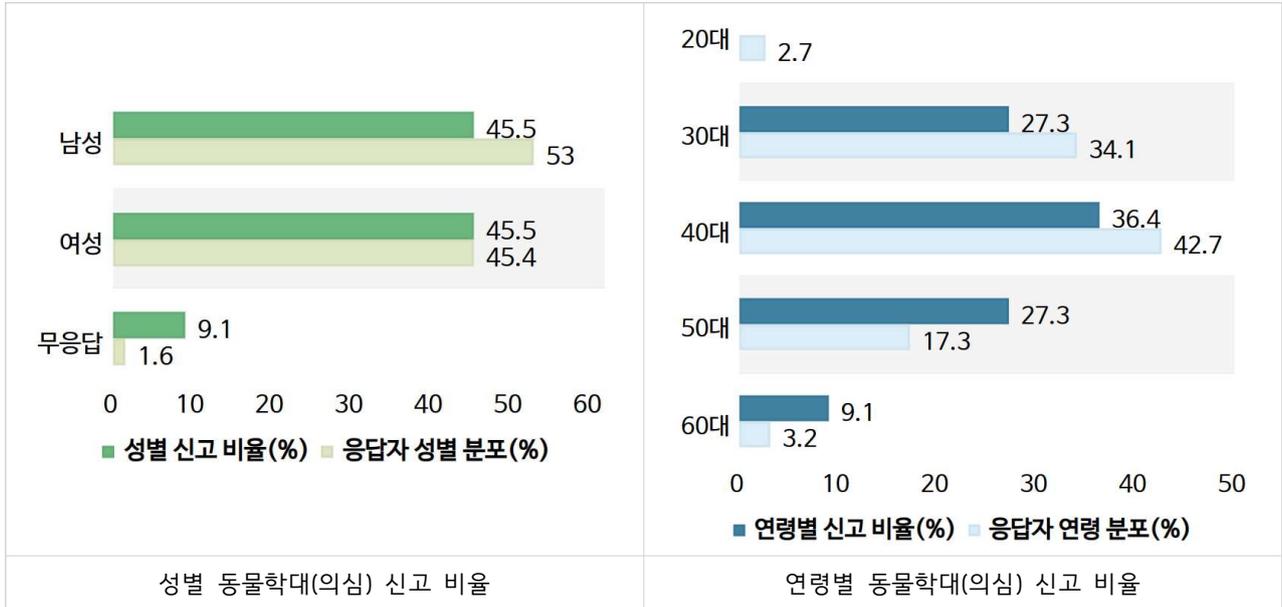
[표 28] 연령별 학대 의심 신고

(단위: 명, 비율(%)*)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합계
0	3 (27.3%)	4 (36.4%)	3 (27.3%)	1 (9.1%)	11

* 비율은 응답자 11명에 대한 신고 비율을 나타냄.

[그림 22] 성별, 연령별 동물학대(의심) 신고 비율



○ 직책별 비율은 원장 혹은 원장을 복수로 응답한 수의사⁵⁶⁾가 81.8%로 신고 비율이 높으며, 상대적으로 풀타임 고용 수의사의 경우 신고 비율이 18.2%로 저조하였음.

[표 29] 직책별 학대(의심) 신고 여부

(단위: 명,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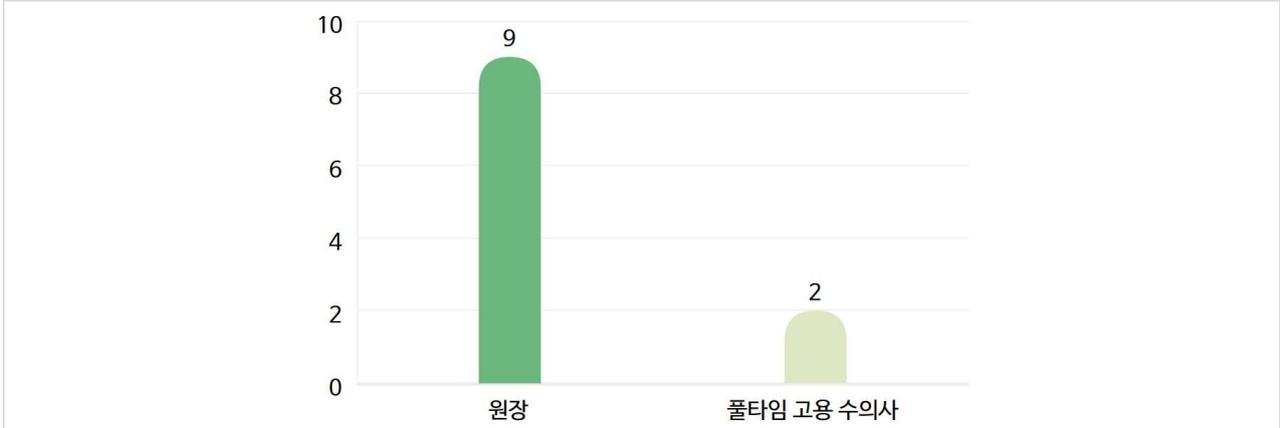
원장	풀타임 고용 수의사	합계
9 (81.8%)	2 (18.2%)	11

* 비율은 응답자 11명에 대한 신고 비율을 나타냄.

56) 응답자 직책이 원장이거나 원장을 포함한 풀타임 고용 수의사를 복수로 응답한 경우

[그림 23] 직책별 학대(의심) 신고 여부

(단위: 명)



(2) 과거 동물학대(의심) 신고의 처리

- 동물학대(의심) 사건의 처리 결과는 신고 등의 조치를 한 11명에 대해서만 집계하였으며, 이중 경찰에 신고 후 7명이 ‘불송치’ 또는 ‘불기소 의견 송치’되었다고 조사된 반면, 실제 기소까지 되었다고 응답한 경우가 3명에 불과함. 이는 학대(의심) 동물 진료 경험이 있는 175명에 대해서는 1.7%밖에 안 되는 수치임.
- 기타 응답으로는 ‘수사 중이라고만 연락받아 이후 결과는 알 수 없다’와 ‘협의로 보호자가 포기 각서 후 유기동물보호소 입소’ 등이 있음.

[표 30] 동물학대(의심) 신고의 사건 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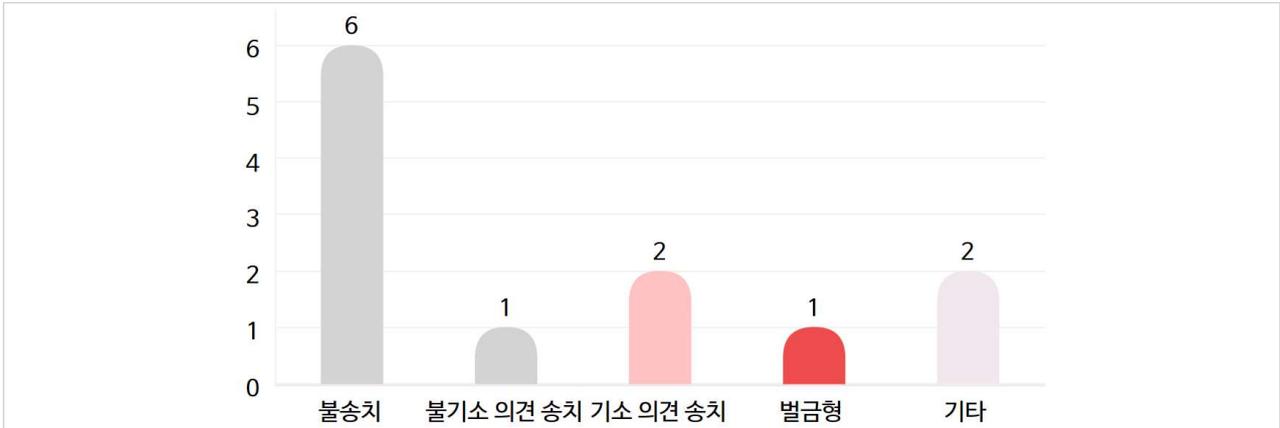
(단위: 명*)

불송치 (경찰 내사 종결)	불기소 의견 송치	기소 의견 송치 (이후 결과 모름)	벌금형	기타
6	1	2	1	2

* 사건의 처리 결과는 동물학대(의심) 신고 응답한 11명에 대해서만 복수 응답으로 집계하였음.

[그림 24] 동물학대(의심) 신고의 사건 처리

(단위: 명)



(3) 과거 동물학대(의심) 미신고 이유

- 동물학대(의심) 사건의 미신고 이유 조사는 앞서 동물학대(의심)의 진료 경험이 없거나 관련 기관에 신고 조치를 하여 응답하지 않은 대상 중 20명과 무응답 3명 제외한 162명에 대해 집계한 수치이며, 응답 분류는 복수로 처리하였음.
- 동물학대(의심) 사건에 대해 신고하지 않은 가장 주된 이유는 ‘보호자와의 갈등을 원하지 않아서’가 93명(57.4%) 응답하였고, 이어서 ‘신고해도 사건이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 73명(45.1%), ‘법적으로 곤란해지는 상황을 원하지 않아서’가 53명(32.7%) 순으로 응답하였음. 또 ‘신고가 가능한지 몰라서’가 40명(24.7%), ‘어디로 신고해야 할지 몰라서’라고 응답한 경우도 36명(22.2%)으로 다수 있었음. 이 외에도 9명(5.6%)은 ‘정황상 학대가 맞더라도, 법적으로 처벌할 만한 명확한 증거가 아니라서’라고 응답하였음.
- 기타 응답으로는 학대자를 알 수 없어 신고가 어려운 경우 이거나, 학대자가 보호자 주변인 경우 보호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보호자가 직접 해결을 원하는 경우가 있어서 신고하지 않았다는 응답 등이 있었음.

[표 31] 동물학대(의심) 미신고 이유

(단위: 명, 비율(%)*)

미신고 이유	응답자 수	응답자 비율(%)
보호자와의 갈등 유발을 원치 않아서	93	5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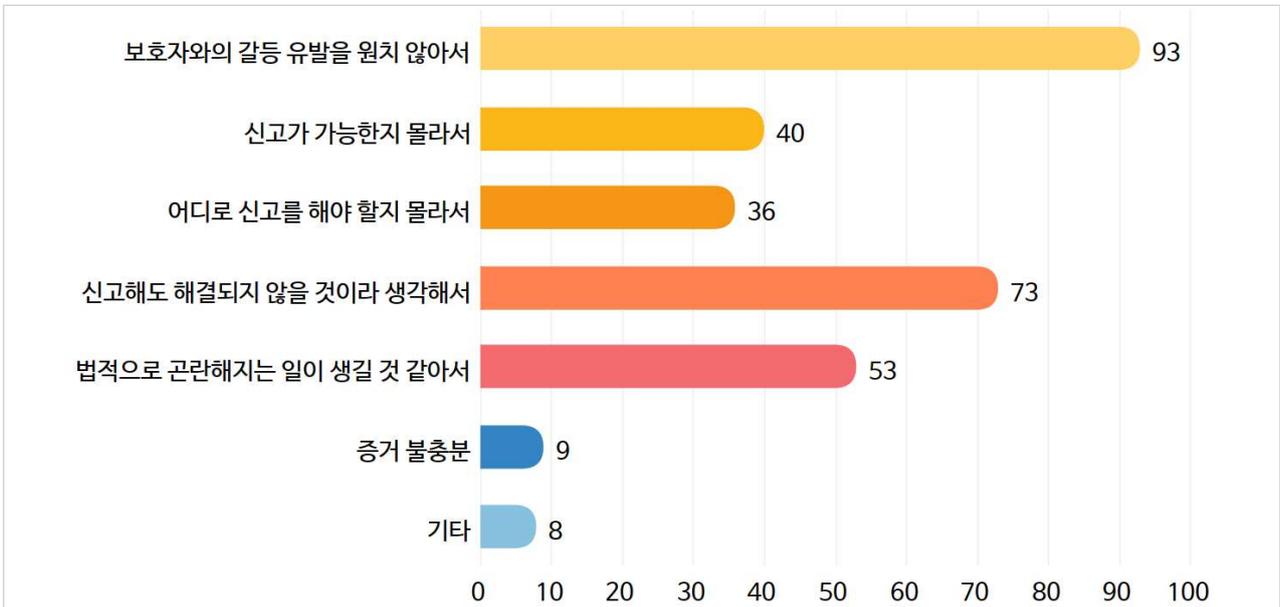
●●● 수의사 대상 동물학대 진료 경험 및 동물학대 대응체계 조사

신고가 가능한지 몰라서	40	24.7
어디로 신고해야 할지 몰라서	36	22.2
신고해도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해서	73	45.1
법적으로 곤란해지는 일이 생길 것 같아서	53	32.7
증거 불충분	9	5.6
기타	8	4.9

* 복수 응답 처리하여 비율의 합은 100%가 아니며, 비율은 응답자 162명에 대한 비율을 나타냄.

[그림 25] 동물학대(의심) 미신고 이유

(단위: 명)



3) 향후 동물학대 대응 의향

가) 향후 동물학대 대응의 협조 의향 여부

- 향후 동물학대 대응 기관의 협조 요청에 대한 의향 조사는 응답자 총 185명에 대하여 집계하였음.
- 동물학대 대응 관련 기관(정부, 지자체, 경찰)에서 협조 요청 시 응하겠다고 응답한 경우가 178명(96.2%)으로 다수를 차지, 이는 수의사 대부분이 동물학대 대응에 긍정적 태도를 가지

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임.

[표 32] 향후 동물학대 대응의 협조 의향 여부

(단위: 명, 비율(%))

기관 협조에 응함	기관 협조에 응하지 않음	합계
178 (96.2%)	7 (3.8%)	185

[그림 26] 향후 동물학대 대응 기관의 협조 의향 여부

(단위: 명)



나) 향후 동물학대 대응의 협조 방법

- 향후 동물학대 대응의 협조 방법과 관련하여 기관 협조 요청에 응하겠다고 답한 178명을 대상으로 집계하였으며, 복수 응답으로 처리하였음.
- 동물학대 대응 방법으로 학대와 관련하여 소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135명 (75.8%)으로 가장 많이 차지하였고, 이어서 피학대 동물의 진료와 치료를 도울 수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122명(68.5%) 순이며, 학대로 폐사한 동물의 검안과 동물학대 대응 관련자(담당 공무원, 경찰 등)의 교육이나 자문이 각각 46명(25.8%), 학대 현장에 동반 조사할 수 있다고 답한 경우가 18명(10.1%)으로 조사되었음.

●●● 수의사 대상 동물학대 진료 경험 및 동물학대 대응체계 조사

[표 33] 향후 동물학대 대응의 협조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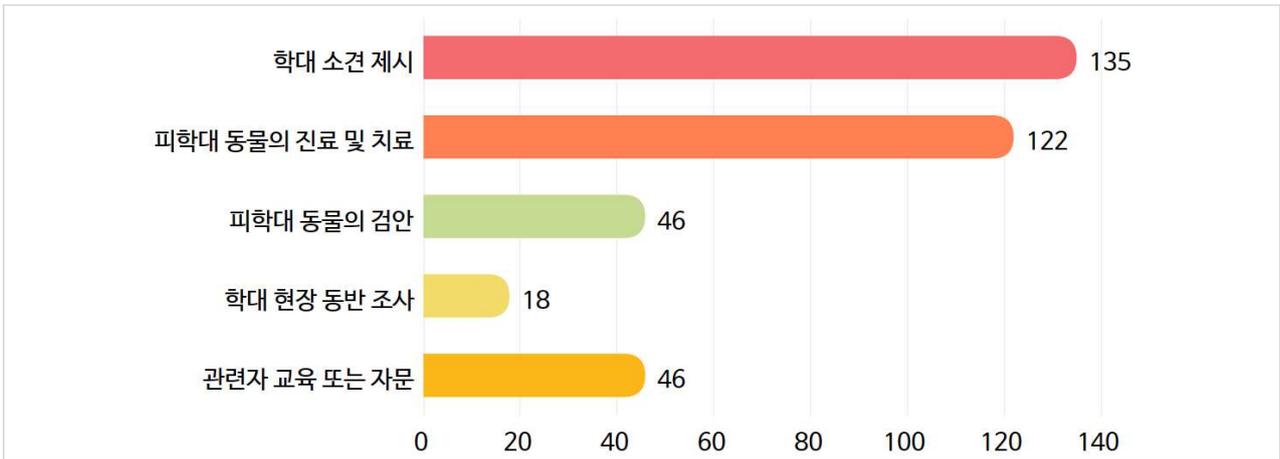
(단위: 명, 비율(%)*)

미신고 이유	응답자 수	응답자 비율(%)
피학대 동물의 학대 여부에 대한 소견 제시	135	75.8
피학대 동물의 진료 및 치료 (보호 단계)	122	68.5
피학대 동물의 검안 (동물의 사망 시)	46	25.8
학대 현장 동반 조사	18	10.1
공무원, 경찰 등 관련자에게 교육(학대 징후 등) 또는 자문	46	25.8

* 복수 응답 처리하여 비율의 합은 100%가 아니며, 비율은 응답자 178명에 대한 비율을 나타냄.

[그림 27] 향후 동물학대 대응의 협조 방법

(단위: 명)



4) 동물학대 예방 및 대책 의견

- 동물학대와 예방 및 대책 관련하여 총 185명 중 107명(57.8%)의 수의사가 자유롭게 의견을 작성해 주었음. 작성된 의견들은 사후 크게 4가지 사항으로 좁혀졌으며, 일부 의견은 분류상 복수로 처리되었음.
- 동물학대 예방을 위한 가장 많은 의견으로 보호자 대상으로 학대 관련 교육과 홍보활동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39명이었으며, 동물학대에 대한 단속과 법적 처벌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 31명, 동물병원 종사자를 위한 동물학대 대응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의견 16명, 동물등록제 시행 강화와 입양 제한(예: 과거 동물학대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15명이

있음.

- 기타 응답으로는 학대 가해자와 분리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 가정폭력이 동물학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 수의사 스스로가 용기를 가지고 신고하자는 의견 등이 있었음.

[표 34] 동물학대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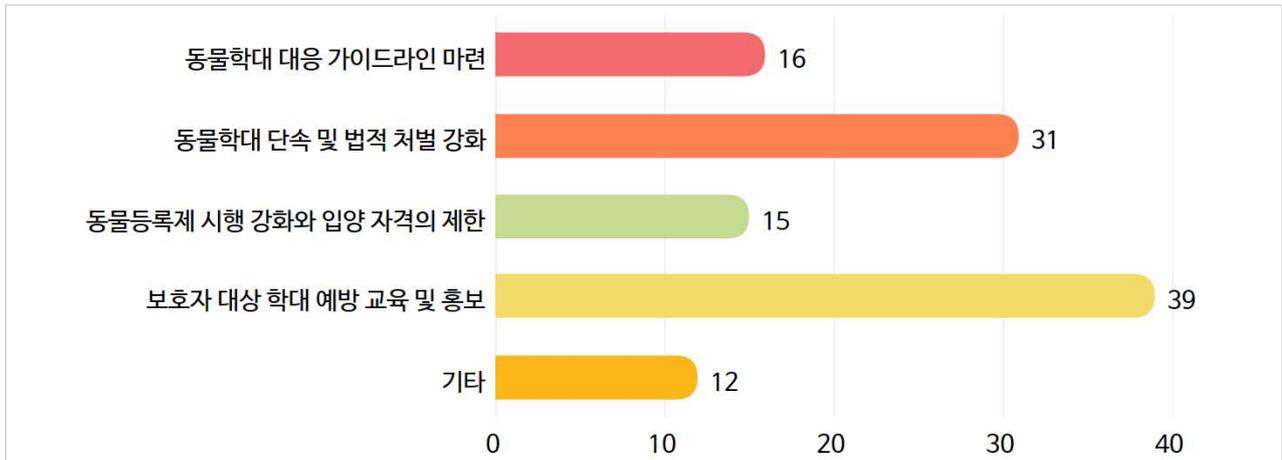
(단위: 명*)

동물학대 예방 및 대책 의견	응답자 수
동물학대 대응 가이드라인 마련	16
동물학대 단속 및 법적 처벌 강화	31
동물등록제 시행 강화와 입양 자격의 제한	15
보호자 대상 학대 예방 교육 및 홍보	39
기타	12

* 동물학대 예방 및 대책 의견은 응답자 107명이 자유롭게 작성하였음.

[그림 28] 동물학대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의견

(단위: 명)



3. 조사 및 평가의 한계

- 동물학대의 경우 아동학대나 기타 가정폭력과 달리 통계의 부재로 정확한 학대 비율이나 신고율, 사건의 처리 현황 등을 파악하기 어려움이 있음. 또한 본 조사에서도 동물병원에 종사하는 수의사 대상으로 동물학대 사례를 조사하다 보니, 동물병원에 내원하지 않은 동물학대 사례는 반영되지 않은 결과임.
- 본 조사는 '22년 11월~12월 수의사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였으며, 문헌 조사 및 결과 산출은 '23년에 진행되었음. 2023년 4월 「동물보호법」 전부 개정으로 인해 법률적 “동물 학대”의 범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설문 응답 이후 사후 통계 처리가 되어 무응답이나 항목 간 내용이 상충하는 경우 응답자로부터 재확인이 어려운 점이 있어, 조사원들 간의 논의를 거쳐 이상값을 처리하여 결과를 산출하였음.
- 학대 관련 조사에서 수의사의 종합적 경험을 토대로 복수 응답이 이루어지다 보니, 사건 별 피해 동물의 상해, 사건의 처리 등을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 추후 조사에서는 개별 동물 학대 사건에 대하여 관련 내용 조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4. 결론 및 제언

가. 결론

1) 동물학대 관련 법률 및 대응 체계

- '23년 개정된 「동물보호법」 제9조에서는 적정한 사육·관리 방법과 의무, 제10조 동물학대 금지행위, 제97조에서는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이 명시되어 있으나, 실제 기소까지 가는 사례도 드물며, 재판까지 가더라도 잔인하게 동물을 죽인 동물학대범에도 집행유예나 가벼운 벌금형에 그친 사례가 다수 있음. 실제 2010년부터 2020년까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송치된 2,751명 중 구속된 사례는 5명에 불과하였음.⁵⁷⁾ 또한 사법부에서도 아직까지 동물학대 범죄 양형기준 수립을 위한 논의⁵⁸⁾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시민들의 동물학대 인식에 비해 법적 대응 체계는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한 상황임.
- 동물학대의 경우 가정 내 사건이 다수라 학대 사실의 발견이 어렵다는 점, 피학대 동물의 피해 사실을 증명하기 어렵다는 점, 훈육과 체벌에 대해 관대한 사회적 인식으로 학대를 훈육으로 정당화시키기 쉽다는 점, 피해 동물의 학대 환경으로부터의 분리, 보호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아동학대 사건과 유사함. 아동학대 사건 발견은 가정이 아닌 제3자(보육기관이나 교육기관, 의료기관 등)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동물학대 감시에서도 수의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감시시스템에 따르면 동물학대 사건 발생 시 관할 지자체와 경찰, 사법부의 공조 체제로 사건이 처리되고 있지만, 지난해 '22년도 「동물보호법」 위반 처분 1,181건 중 동물학대는 36건에 불과⁵⁹⁾하고, 같은 해 검역본부에 폐사한 동물 부검 의뢰 사례 323건 중 동물병원이나 개인이 16%인데 비해 지자체 의뢰가 7%인 점을⁶⁰⁾ 생각하면, 아직 동물보호감시시스템의 작동이 미비한 것으로 보임. 이와 관련하여 현재 동물학대 대응체계에 대하여 재고할 필요가 있음.

57) 이경현, [칼럼] 국내 반려동물에서의 수의법의검사 현황, 데일리벳, 2023.08.01.
<https://www.dailyvet.co.kr/news/189934>

58) 정진욱, "신고하면 뭐하나요".. 여전히 벌금·집행유예 그치는 동물학대 사건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91110520002645>

59) 농림축산식품부, 2022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 보도자료, 4.(명예)동물보호관 운영 현황, 2023.08.11

60) 이경현, [칼럼] 국내 반려동물에서의 수의법의검사 현황, 데일리벳, 2023.08.01.

●●● 수의사 대상 동물학대 진료 경험 및 동물학대 대응체계 조사

- 동물학대와 아동학대를 비교하면, 아동학대의 경우 「아동복지법」과 별도로 「아동학대처벌법」, 「가정폭력방지법」, 「청소년성보호법」 등 학대 유형에 따라 구체적으로 법제화되어 있는 반면, 동물학대의 경우 「동물보호법」 일부 조항으로만 규정되어 있음.
- 또한 아동학대의 경우 신고의무자인 진료자가 학대 신고의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으며, 신고자의 경우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의2와 3에 따라 구체적인 보호조치와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나, 동물학대의 경우 「동물보호법」 제39조에 따른 신고 의무와 신상 보호 의무가 명시되어 있을 뿐, 이를 위반하더라도 처벌 근거가 없어 실효성이 없는 상황임.
- 의료기관 종사자의 경우 ‘의사들을 위한 아동학대 예방 및 치료 지침서’ 및 ‘의료인 신고 의무자용 아동학대 선별도구(FIND)’와 같은 학대 신고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 있으며, 신고의무자 대상의 정기적 교육도 시행되고 있음. 반면 동물병원 종사자의 경우 신고 관련 지침이나 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도 없어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감별도 개인의 판단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임.
- 해외의 경우 동물학대 시 수의사의 대응 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음. 국제적으로 인간과 동물학대를 예방하는 단체인 링크 그룹(Links Group)에서는 ‘동물과 인간학대 의심: 수의학 팀을 위한 가이드북’을 발간하였으며, 미국의 경우 미국수의사회(American Veterinary Medical Association, AVMA)에서 ‘학대 및 방치가 의심되는 동물 발견 시 수의사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지침’을 발간하였음. 영국의 경우 동물학대 의심 상황 발생 시 수의사는 영국 왕립동물학대방지협회(Royal Society for the Prevention of Cruelty to Animals, RSPCA), 스코틀랜드 동물학대방지협회(Scottish Society for the Prevention of Cruelty to Animals, SSPCA) 또는 지방의회 동물복지 담당자에게 보고할 수 있으며, 왕립수의학기관(Royal College of Veterinary Surgeons, RCVS)의 「수의사 직업 행동 강령 지침」에서는 동물학대 의심 시 보호자 정보를 당국에 올바르게 전달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어, 수의사 대상의 가이드라인 및 제도가 마련되어 있음.

2) 수의사 대상 동물학대 관련 조사

가) 동물학대(의심) 진료

- 응답자 총 185명 중 175명(94.6%)이 동물학대(의심) 환자의 진료 경험이 있으며, 경력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평균 5.3회, 최근 2년 동안에 평균 1.7회 의심 사례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그러나 개농장 및 영업장소에서는 물론 일반 가정에서 동물학대로 다치거나 죽어도 내원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 이 수치는 실제 동물학대 사례 일부만을 반영하고 있음.
- 동물학대(의심) 병변으로 상해 분류를 포함하기 어려운 경우를 제외한 169명 중 골절이나 근 골격계 손상 환자 진료 경험이 있다고 한 응답자는 114명(67.5%)으로 가장 많았고, 안구돌출이나 각막 손상과 같은 안과 병변이 80명(47.3%), 뇌진탕 70명(41.4%), 타박상이나 찰과상, 열상, 자상 등 피부 손상이 65명(38.5%)으로 물리적 충격에 의한 상해가 다수 차지하였음. 방치(의심)에 의한 영양실조로 내원한 사례도 58명(34.3%)이 응답하였음. 외상의 경우 우연한 사고에 의한 것인지, 신체적 학대로 인한 것인지 명확하게 진단이 어려운 측면이 있어 학대를 감별 진단하기 위한 병력, 상해, 피해 동물의 행동적 특성을 고려한 지침이 필요함.
- 동물학대(의심) 환자의 내원 당시 상태와 관련하여 총 175명 중 전치 3주 이하의 경상 환자의 진료 경험이 있는 경우가 110명(62.9%), 전치 4주 이상의 중상 환자 진료 경험이 있는 경우가 107명(61.1%)으로 다수를 차지하였음. 또한 응답자 중 35명(20.0%)이 내원 당시 사망한 사례를 경험하였으며, 내원 당시 '중상'이었다가 치료 과정에서 '사망'으로 응답한 최소 29명까지 더하면, 적지 않은 수의 동물병원 수의사가 동물학대로 인한 사망 사례를 경험하였다고 할 수 있음. 이는 동물학대로 사망하여도 보호자가 임의로 사체를 처리한 경우를 고려하면, 실제 심각한 정도의 동물학대 사례는 조사된 결과값의 이상이라고 할 수 있음.
- 치료 이후 환자의 상태와 관련하여 무응답을 제외한 174명 중 '증세 호전'이 145명(83.3%)으로 '증세 악화' 32명(18.4%)보다 4배 이상으로 조사되었음. 이는 학대(의심) 환자의 수의학적 처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결과임.
- 동물학대(의심) 가해자와 관련하여, 총 175명 응답자 중 117명(66.9%)이 보호자(반려인)라고 답하였음. 또한 105명(60.0%)은 보호자 주변인(가족, 동거인, 지인 등)을 가해자라고 답하여, 동물학대 사건 발생은 가족이나 가까운 관계에서 주로 일어날 가능성을 보여주는 결과임. 이는 아동학대나 가정폭력과 같이 동물학대 역시 가정 내 발생하는 특성이 있어 학대 여부 확인이 더욱 어렵다는 것을 의미함.

나) 동물학대(의심) 대응

- 과거 동물학대 진료 경험이 있는 수의사 175명 중 실제 신고까지 한 경우는 11명(6.3%)으로 신고 비율은 다소 저조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신고자 특성과 관련하여 성별이나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신고자 11명 중 9명이 원장으로 직책에 따라 신고 비율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신고한 11명 중 7명은 경찰 조사 결과에서 ‘불송치’ 또는 ‘불기소 의견 송치’되었다고 하였으며, 실제 기소까지 사건이 처리된 경우는 3명으로 조사되었음. 이는 학대(의심) 진료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175명을 기준으로 봤을 때 1.7%밖에 안 되는 수치임.
- 동물학대 신고율이 저조한 가장 주된 이유는 '보호자와 갈등을 원하지 않아서' 93명(57.4%)으로 가장 많았고, '법적으로 곤란해지는 상황을 원하지 않아서'가 53명(32.7%)으로 이는 동물학대 신고가 동물병원 입장에서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또한 '신고해도 사건이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가 73명(45.1%)으로 신고 처리에 대한 불신도 주된 요인 중 하나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 향후 동물학대 발생 시 대응 관련 기관(정부, 지자체, 경찰)에 협조하겠다고 한 경우가 총 185명 중 178명(96.2%)으로 조사되었으며, 이 중 협조 방법으로 학대 사실에 대한 소견 제출이 135명(75.8%)으로 가장 많이 차지하였고, 이어서 피해 학대 동물에 보호나 치료가 122명(68.5%) 순으로 조사되었음. 이 외에도 학대로 폐사한 동물의 검안이나 관련 기관에 자문 요청에 각 46명(25.8%)으로 일부 응답하였으며, 사건 현장에 동반과 같은 적극적 태도를 보인 응답자도 18명(10.1%) 조사되었음. 조사 결과로 볼 때 동물학대 대응 시스템만 잘 갖추어진다면 대부분 수의사는 관련 기관에 협조할 것으로 보임.

다) 동물학대 예방 및 대책 의견

- 동물학대 예방이나 대책을 위한 조사에서 107명(57.8%)이 의견을 주었음. 이 중 보호자 대상 동물학대 관련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39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동물학대 단속 및 법적 처벌강화가 31명, 이외 학대 대응 가이드라인 마련 16명, 동물등록제 시행 강화와 입양 조건을 까다롭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15명이었음. 향후 이러한 의견들을 고려하여 사전적으로는 보호자 대상 동물학대 예방 교육이 필요하고, 사후로는 동물학대 발생 시 대응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함.

나. 제언

1) 사법부의 동물학대 인식 전환의 필요성

- 동물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고 있지만, 아동학대나 가정폭력과 같은 범죄와 비교하면 법률적·제도적 장치가 아직 부족한 상황임. 2021년 7월 법무부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신설 조항을 담은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지만, 여전히 관련 법안은 국회에서 계류 중이고, 재판과 관련해서는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수립에 대한 논의조차 되지 않은 상황임. 동물학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입법부와 사법부의 동물학대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함.

2) 동물학대를 제보하는 수의사의 법적 보호 장치 마련

- 현행법상 신고자를 위한 법적 보호 장치는 없으며, 오히려 신고자가 보호자의 개인정보를 기반으로 신고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유출⁶¹⁾과 가해자로부터 무고죄로 역고소 당할 수 있는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임. 이에 신고한 수의사나 동물병원의 피해를 고려하여 동물학대 대응 체계 마련해야 하며, 신고자의 신변이 노출되지 않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과 제도적 장치 마련되어야 함.

3) 동물학대 예방 교육자료 마련 및 배포 방법 강구

- 동물학대 예방 대책에 대한 수의사의 의견 중, 보호자 대상 동물학대 관련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던 만큼, 동물학대 예방을 위한 사전적 노력이 필요함. 이와 관련하여 보호자들을 위한 동물학대 예방 교육자료 마련과 효과적인 배포 방법, 또 이 과정에서 동물병원 시스템의 활용 방안과 역할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함.

61) 남종영, 국내 수의사 80% “동물학대 의심 사례 봤다”...신고는 망설여, 한겨레, 2020.05.22.
https://www.hani.co.kr/arti/animalpeople/companion_animal/946061.html

4) 동물학대 대응체계의 보완

- 현재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동물학대의 신고·처리를 위한 동물보호감시시스템을 마련하였지만, 최근 동물학대 사건 신고 건수 '22년 6,594건⁶²⁾에 비교하여 같은 해 지자체 동물보호관에 의한 처분 현황은 36건으로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음. 또한 현 동물보호감시시스템에서는 초기 단계인 신고에서부터 피학대 동물의 보호까지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수의사와 동물병원 종사자의 역할이 축소되어 있음. 본 조사에서 다수의 수의사(96.2%)가 동물학대 사건 협조 요청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보이는 만큼 이를 고려하여 동물학대 대응체계를 보완해 나가야 함.

5) 링크 그룹(Links Group)의 전략적 도입

- 영국의 링크 그룹(Links Group)은 수의사와 동물병원 종사자를 위한 동물학대 대응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초기 동물학대 사실의 감별단계에서부터 피해 동물의 보호까지 대응 과정 전반에 걸쳐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음. 또한 링크 그룹(Links Group)의 주목할 만한 점은 동물학대를 넘어, 타 기관이나 단체와 협력하여 동물이든 사람이든 피해자들이 학대에서 벗어나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는 점, 동물학대와 인간학대(아동학대, 가정폭력, 노인학대)사이 연결고리에서 동물병원 종사자들의 긍정적 영향력과 구체적인 역할을 설명하고 있다는 점이라 할 수 있음. 이에 현 국내 동물학대 대응 체계에서도 링크 그룹(Links Group)의 전략적 도입을 고려해야 함.

62) 정진욱, “신고하면 뭐 하나요”.. 여전히 벌금·집행유예 그치는 동물학대 사건, 한국일보, 2023.09.12.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91110520002645>

5. 참고문헌

가. 국내 문헌

- 「수의사의 윤리강령」, 대한수의사회, 개정 2023.02.28.
http://www.kvma.or.kr/kvma_Veterinary_society?num=7
- 「수의사의 신조」, 대한수의사회, 개정 1922.02.27.
http://www.kvma.or.kr/kvma_Veterinary_society?num=8
- 「동물보호법」, 시행 2023.09.15.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30915&lsiSeq=248779#J97:0>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시행 2023. 04.27.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30427&lsiSeq=250599#0000>
- 「아동복지법」, 시행 2023.09.15.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30915&lsiSeq=248785#0000>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23.06.28.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30628&lsiSeq=246615#J63:0>
- 「근로기준법」, 시행 2021.5.18.
<https://www.law.go.kr/LSW/main.html>
- 이학범, 수의사 신조에 동물복지 개념 담는다, 데일리벳, 2023.05.19.
<https://www.dailyvet.co.kr/news/association/186048>
- 이학범, 검역본부 부설 동물병원 개원…“수의법의학 검사 수행”, 데일리벳, 2023.02.24.
<https://www.dailyvet.co.kr/news/prevention-hygiene/181205>
- 이학범, 경찰 과학수사 자문위원에 수의법의학 전문가 위촉, 데일리벳, 2023.03.15.

<https://www.dailyvet.co.kr/news/etc/182442>

- 이학범, 동물학대 안 놓치려면 동물병원 수의사 대상 수의법의학 교육 필요, 데일리벳, 2023.03.30.

<https://www.dailyvet.co.kr/news/policy/183214>

- 윤상준, 동물병원 수의사 86%가 동물학대 의심사례 마주친다, 데일리벳, 2020.05.22.

<https://www.dailyvet.co.kr/news/animalwelfare/131429>

- 이경현, [칼럼] 국내 반려동물에서의 수의법의학 검사 현황, 데일리벳, 2023.08.01.

<https://www.dailyvet.co.kr/news/189934>

- 정진욱, “신고하면 뭐 하나요”... 여전히 벌금·집행유예 그치는 동물학대 사건, 한국일보, 2023.09.12.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91110520002645>

- 남종영, 국내 수의사 80% “동물학대 의심 사례 봤다”...신고는 망설여, 한겨레, 2020.05.22.

https://www.hani.co.kr/arti/animalpeople/companion_animal/946061.html

- 김상기, 진료실에서 본 아이, 어떤 경우 아동학대를 의심하고 신고는 어떻게?, 라포르시안, 2019.12.03.

<https://www.rapport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21908>

- 의사들을 위한 아동학대 예방 및 치료 지침서, 대한의사협회 국민의학지식향상위원회 산하 아동학대예방대책팀, 대한의사협회지, 2003.

- 대한의사협회 교육센터, 의료인을 위한 아동학대 의심사례 신고의무자 교육

https://edu.kma.org/edu/cyber_view?cyidx=76

- 인구아동정책관 아동학대대응과, 광역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새싹지킴이병원)을 전국으로 확대합니다!, 보건복지부, 2023.02.02.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 ONT_SEQ=374851

- [이슈리포트] Vol.8 아동학대와의 비교를 통한 동물학대 대응체계 개선방향, 동물자유연대, 2021.07.
<https://www.animals.or.kr/report/print/57169>
- 2022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23.08.11.
<https://www.mafra.go.kr/home/5109/subview.do>
- 실무노동용어사전, (주)중앙경제, 2014.
<http://www.elabor.co.kr/>
- Joo S, Jung Y, Chun MS. An Analysis of Veterinary Practitioners' Intention to Intervene in Animal Abuse Cases in South Korea. *Animals (Basel)*. 2020 May 6;10(5):802. doi: 10.3390/ani10050802. PMID: 32384721; PMCID: PMC7277084.

나. 해외 문헌

- Suspect abuse of animals and people: Guidance for the veterinary team, Links Group,
<https://thelinksgroup.org.uk/veterinary-team-guidance>
- 7 USC Ch. 54: TRANSPORTATION, SALE, AND HANDLING OF CERTAIN ANIMALS,
<https://uscode.house.gov/view.xhtml?path=/prelim@title7/chapter54&edition=prelim>
- 18 USC 49: Enforcement of animal fighting prohibitions,
[https://uscode.house.gov/view.xhtml?req=\(title:18%20section:49%20edition:prelim\)%20OR%20\(granuleid:USC-prelim-title18-section49\)&f=treesort&edition=prelim&num=0&jumpTo=true](https://uscode.house.gov/view.xhtml?req=(title:18%20section:49%20edition:prelim)%20OR%20(granuleid:USC-prelim-title18-section49)&f=treesort&edition=prelim&num=0&jumpTo=true)
- Subpart A—Specifications for the Humane Handling, Care, Treatment, and Transportation of Dogs and Cats1,
<https://www.ecfr.gov/current/title-9/chapter-I/subchapter-A/part-3/subpart-A>

- Ohio Revised Code Title IX. Agriculture Animals Fences,
<https://codes.findlaw.com/oh/title-ix-agriculture-animals-fences/#!tid=N05C45280E30611E694B8880A7C54FE94>
- Ohio Revised Code Title XVII. Corporations Partnerships,
<https://codes.findlaw.com/oh/title-xvii-corporations-partnerships/oh-rev-code-sect-1717-01.html>
- Ohio Revised Code Title XXIX. Crimes Procedure,
<https://codes.findlaw.com/oh/title-xxix-crimes-procedure/#!tid=N6A472E805DE711DB8852FC25F2F5B472>
- American Veterinary Medical Association, Reporting Requirements for Animal Abuse, 2021.10.
https://www.avma.org/sites/default/files/2021-10/Reporting-requirements_for-animal-abuse.pdf
- Animal Welfare Act, 시행 2019.06.08.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2006/45/contents>
- Animal Legal&historical Center, Map of Veterinary Reporting Laws for Animal Cruelty,
<https://www.animallaw.info/content/map-veterinary-reporting-laws-animal-cruelty>
- The Judicial Review and Courts Act 2022 (Magistrates' Court Sentencing Powers) Regulations,
<https://www.legislation.gov.uk/uksi/2023/149/schedule/part/1/made>
- Criminal Justice Act 1991, 개정 2020.12.01.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1991/53/section/17>
- Code of practice for the welfare of Cats, Canine&Feline Sector Group, 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Rural Affairs, 2017.12.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code-of-practice-for-the-welfare-of-cats>

- RSPCA Prosecutions Annual Report 2019.
<https://www.rspca.org.uk/whatwedo/endcruelty/prosecution>
- The Royal College of Veterinary Surgeons,
<https://www.rcvs.org.uk/home/>
- Practical Guidance for the Effective Response by Veterinarians to Suspected Animal Cruelty, Abuse and Neglect, Phil Arkow, Paula Boyden, Emily Patterson-Kane, American Veterinary Medical Association, 2011.02.04.
<https://ebusiness.avma.org/Files/ProductDownloads/AVMA%20Suspected%20Animal%20Cruelty.pdf>
- Supporting guidance, The Royal College of Veterinary Surgeons,
<https://www.rcvs.org.uk/setting-standards/advice-and-guidance/code-of-professional-conduct-for-veterinary-surgeons/supporting-guidance/>
- National Link Coalition, Foreign Coalitions,
<https://nationallinkcoalition.org/link-coalitions/foreign-coalitions>



동물자유연대는 인간에 의해 관리되는 모든 동물들이 인도적인 대우를 받게 하고자 하며, 더 나아가 인간에 의해 이용되거나 삶의 터전을 잃어가는 동물의 수(數)와 종(種)을 줄여나감으로써 인간과 동물이 생태적·윤리적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